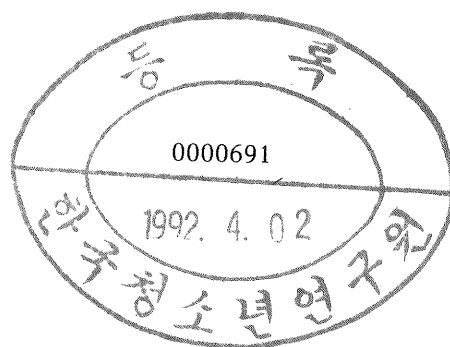


334.6-
288/33

90-03-01

韓國青少年 中長期綜合計劃研究(案)

—第7次 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 青少年部門(案)—



한국청소년연구원

목 차

제 1 장	계획의 배경	1
제 1 절	중장기계획의 필요성과 목적	1
제 2 절	미래사회상과 청소년상 정립	2
제 3 절	청소년 현황과 정책의 변천과정	2
제 2 장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8
제 1 절	목 표	8
제 2 절	기본방향	8
(1)	청소년기 활동영역 및 체계재편	8
(2)	수련거리 (프로그램, 사업) 개발	9
(3)	수련터전 (장소, 시설, 설비) 확보	10
(4)	청소년지도자의 제도적 양성 배치	10
(5)	청소년 단체의 적극 육성	11
(6)	중장기 종합계획의 실효성 보장	11
(7)	범국민운동 차원으로 전개	12
(8)	청소년정책의 일관성 유지	12
제 3 장	정책과제별 실천계획	13
제 1 절	수련거리 (프로그램, 사업)의 개발·보급	13
(개 요)		13
(현황 및 문제점)		13
(추진방향)		15

(주요사업 계획)	16
(1) 수련지표의 설정	16
(2) 수련 방법	17
(3) 개별 수련거리	18
(4) 공통 수련거리	26
(5) 수련거리의 개발·보급	33
제 2 절 수련터전의 확충	34
(개 요)	34
(현황 및 문제점)	34
(추진방향)	38
(주요사업 계획)	39
(1) 기존 수련터전 활용도 제고	39
(2) 생활권내 수련터전 확충	41
(3) 자연권 수련터전 확충	43
(4) 수련터전 확보 방안	45
(5) 수련터전의 이용·관리 계획	46
제 3 절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	48
(개 요)	48
(현황 및 문제점)	48
(추진방향)	50
(주요사업 계획)	50
제 4 절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2
(개 요)	52

(현황 및 문제점)	52
(추진방향)	53
(주요사업 계획)	54
제 5 절 남북한 청소년 동질성 회복	56
(개 요)	56
(현 황)	56
(문 제 점)	57
(추진방향 및 사업)	58
제 6 절 청소년 유해 환경 정비	59
(개 요)	59
(현 황)	59
(문 제 점)	63
(추진방향 및 사업)	65
제 7 절 어려운 청소년 지원	67
(개 요)	67
(현 황)	67
(문 제 점)	70
(추진방향 및 사업)	70
제 8 절 비행청소년 관리	73
(개 요)	73
(현 황)	73
(문 제 점)	75
(추진방향 및 사업)	76

제 4 장	계획의 추진단계	77
제 1 절	도달목표	77
제 2 절	정책 과제별 추진 단계	77
제 3 절	단계별 추진일정	80
*	참고자료	83

제 1 장 계획의 배경

제 1 절 중장기계획의 필요성과 목적

- 청소년은 성숙한 인간이 되는데 필요한 지·덕·체의 기초를 다지는 성장과정의 인격체로서 사회환경과 제도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대로 자란다.
- 그러나 우리 사회는 가치관의 혼란, 도덕성의 퇴락, 질서의 문란, 공해의 만연 등 청소년 유해요인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은 열악한 여건과 지식·기능 편중으로 덕육과 체육이 경시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간의 청소년정책도 일부 문제·비행청소년 위주의 단기적·규제적·소극적 처방에 머물고 있어, 대다수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과 바람직한 한국청소년상의 형성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도 큰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 이에 2000 년대를 내다보면서, 1,360 여만 한국청소년들에게 이상과 꿈을 심어 주고 그들 스스로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계발할 수 있는 「할거리 (프로그램·사업)」와 「터전 (자연공간·시설)」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전담지도자와 함께 덕과 체를 함양할 수 있는 기틀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국민참여, 청소년활동시간보장,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등 제도와 의식의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할 장기적·조장적·근본적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제 2 절 미래사회상과 청소년상 정립

〈미래사회상〉

- 미래사회는 고도산업·정보화 사회로 변모하면서 인간은 물질적 가치 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획일성 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갈 것이며, 국가간에는 상호교류와 이해가 증진되어 모순과 대립에서 조화와 합일의 논리가 보편화되는 국제화 사회로 이행될 것이다.
- 이에 우리 한민족도 대결과 갈등을 극복하고 민족화합의 바탕위에 선진·민주·통일조국을 이룩하여 세계의 중심무대에 당당히 서게 될 것이다.

〈청소년상〉

- 미래사회의 주인이 될 우리의 청소년은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과는 예절 바르고 협동할 줄 알며,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갖고 인류번영에 기여할 줄 아는 밝고 씩씩하며 슬기로운 모습이어야 한다.

제 3 절 청소년 현황과 정책의 변천과정

〈정책대상 청소년현황〉

(1) 청소년의 범주

- 청소년이란 유년기를 지나 소년기와 청년기 사이의 성장기간을 포괄하는 합성어로 현행 청소년 관련 법령은 해당분야의 특수성에 따라 특별법에서 대상연령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육성법에는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소년이 제외되지 않도록 국가정책

대상 청소년의 연령을 9세에서 24세로 설정하고 있음.

— 청소년 연령의 하한연령 설정 (9세) : 심신 단련이나 자질계발 수련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국민학교 4학년 학생 연령으로 제한

— 청소년 연령의 상한선 설정 (24세) : 국회의원 피선거권 (25세)의 국제적인 관례 등을 감안하여 규정

○ 그러나 제 40 차 유엔총회 ('85.11.18) 결의 및 국제평화의 해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for the International youth year)

제 4 차 보고서 ('85.3.25 ~ 4.3)에서는 청소년을 15 ~ 24세까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각국의 경우 18 ~ 20세를 성년으로 인정하여 결혼, 시민권행사, 취업 등 청소년 층의 다양하고 사회적인 측면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획일 적용이 되지않고 있음.

(2) 청소년 인구 현황

○ 청소년 인구는 '89년말 현재 총인구 4,238 만명의 32.2%인 1,364 만 명으로 집계

— 연령별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총 인 구	청 소 년 인 구				
		계	9세	10~14세	15~19세	20~24세
전 국	42,380	13,641 (100)	813 (6.0)	3,974 (29.1)	4,565 (33.5)	4,289 (31.4)
남 자	21,359	7,033 (100)	420 (6.0)	2,049 (29.1)	2,351 (33.4)	2,213 (31.5)
여 자	21,021	6,608 (100)	393 (5.9)	1,925 (29.1)	2,214 (33.5)	2,076 (31.4)
성 비	101.6	106.4	106.9	106.4	106.2	106.6

자료 : 추계인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9)

－ 집 단 별 현 황

(단위 : 천명)

계	학 생	근로청 소년	복무청 소년	무직청 소년
13,641	8,437	2,385	2,238	580
100 %	62 %	17 %	17 %	4 %

• 학생청 소년 현 황

(단위 : 천명)

구 분		인 원 수	비 고
총 계		8,437 (3,814)	※ 국민학교 3 ~ 4 학년 중 9 세 미만인 805,346 명은 제외
국 민 학 교		2,498 (1,212)	
중 학 교		2,276 (1,103)	
고등학교	인 문 계	1,473 (645)	
	실 업 계	811 (428)	
대 학 교	전문대학	324 (119)	
	교육대학	16 (10)	
	대 학 교	1,040 (296)	
	소 계	1,380 (426)	

* ()는 여학생 숫자임.

• 근로청소년 현황 (산업별)

(단위 : 천명)

산 업 별	총 계	농·수 어산업	광 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도·소 매, 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 부동산· 서비스업	사회및 개인서 비스업
계	2,385	112	5	1,079	4	87	488	65	166	379
남	906	88	3	444	1	55	170	28	35	82
여	1,479	24	2	635	3	32	318	37	131	297

• 복무청소년

(단위 : 천명)

인 원 수	비 고
2,238	※ 군인, 전경, 수감자, 장애인 등

• 무직청소년

(단위 : 천명)

인 원 수	비 고
580	※ 재수생, 군입대 대기자, 결혼대기여성 등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 청소년 업무는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국가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는 과제로 나라의 내일을 짊어지고 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건전하고 유능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 중의 하나임.
- 건국이후 ~ 1988.6월까지의 청소년정책
 - 1950년대 : 건국과 한국동란 등의 혼란기로 별도의 청소년 정책이 없었음.
 - 1960년대 ~ 1980년대
 - 농경사회로부터 산업화의 시작단계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국부(國富) 창출에 진력한 나머지 『교육정책의 일부분』으로 취급
 - 1977.8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대책위원회』 구성·운영하였으나, 청소년 업무 전담부서의 분산, 예산지원 부족, 통괄조정기능 미흡 등으로 성과 미흡
- 1988.6월 ~ 1990.9월
 - 청소년육성법 제정·발효('88.5)에 따른 체육부내 청소년국 신설('88.6)
 - 청소년대책위원회 → 청소년육성위원회로 기구 보강
(위원장 : 총리, 민간인 18명 참여)
 - 체육청소년부의 통괄·조정기능 강화
 - 매년도별 청소년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행(31개 부처청 및 15개 시·도)

- 한국청소년연구원 및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89.7.1)
- 청소년헌장 제정·선포 ('90.5.12)
-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등 5개단체 체육청소년부 관리 일원화 ('90.12)
- 체육청소년부 → 청소년정책조정실로 기구 확대 ('90.9.10)
 - 청소년정책의 획기적 전환 모색
 - 종래의 문제 청소년 위주의 청소년정책을 탈피하여 1,360여만 모든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갖고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구축과 여건조성을 위하여 『한국청소년 기본계획』 10개년 장기계획 수립 추진
 - 스스로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수련 『거리와 터전』 마련
 - 청소년지도자와 더불어 지식의 바탕위에 덕과 체를 함양할 수 있는 기틀 구축
 -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도와 국민의식의 개혁에 범정부적, 국민적 노력 경주
 - 유해환경요인, 어려운 청소년, 비행청소년 등 현실적 문제도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장기적·조장적 종합정책 수립

제 2 장 계 획 의 목 표 와 기 본 방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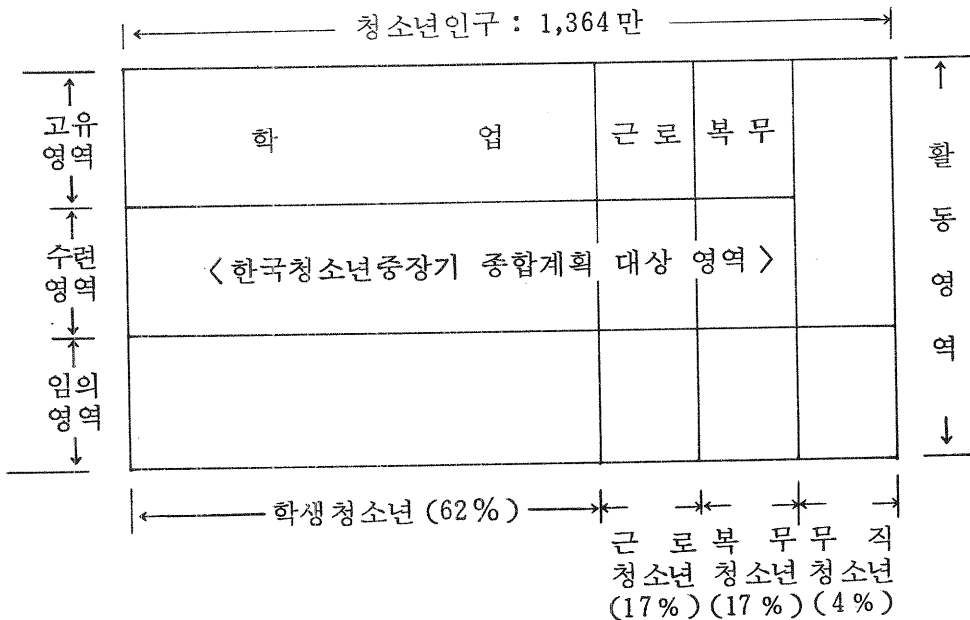
제 1 절 목 표

- 미래사회에 부응할 한국청소년 가치관 정립
- 밝고 씩씩하며 슬기로운 청소년 요람 조성
- 선진·민주·통일조국을 위한 기반 구축

제 2 절 기 본 방 향

(1) 청소년기 활동영역 및 체계재편

- 청소년기의 활동을 다음의 표와 같이 고유영역, 수련영역, 임의영역으로 구분하여, 수련영역의 책임소재 및 업무체계를 확립함.



— 청소년활동 정의

- 고유영역 : 학생청소년의 경우 학업, 근로청소년의 경우 근로, 군·경 등 복무청소년의 경우 복무 등 주된 활동을 말함.
- 수련영역 : 고유영역 이외의 청소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임의시간중 덕·체를 함양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여 수련영역으로 설정
- 임의영역 : 고유영역과 수련영역 이외의 자유시간, 수면시간 등을 청소년 임의영역으로 정의
- 고유영역 및 임의영역에 방임되어 왔던 수련영역의 청소년 활동에 대하여 국가가 기본적인 과정을 개발·보급하고 국민(기관, 단체,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여 수련활동을 정착시킴으로서 학생청소년에게는 산교육을, 근로청소년에게는 생산의욕 고취를, 복무청소년에게는 투철한 복무자세의 확립을 기할 수 있도록 타 영역 활동을 보완함.
- 학교, 직장, 병영 등 고유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련활동은 자율적으로 전개하되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본 중장기종합계획에 의한 수련거리, 수련터전, 지도자 및 자금을 지원받음.
- 가정·사회 등 임의영역에서는 청소년현장 정신에 따라 「어른 책 임선언」, 「가정청소년지도규범」의 제정·시행으로 수련활동을 돕도록 함.

(2) 수련거리(프로그램, 사업)개발

- 수련거리는 창의적 개인성 계발을 위한 건강·정서·용기와 상호적

사회성계발을 위한 예절·협동·공지를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함.

- 개발된 수련거리는 적용할 대상·년령·시기·장소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보급하고 이를 지속적·체계적으로 발전·보완함.
- 개발된 수련거리는 자연권에서 이수하는 자연권 수련거리와 생활권에서 1일 또는 2일간 개인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이수하는 생활권 수련거리로 구분함.

(3) 수련터전 (장소, 시설, 설비) 확보

- 수련터전 (장소, 시설, 설비)은 수련거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유형과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하여 확보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함.
- 자연권수련터전은 한국청소년대전당, 국토탐사로, 바들산수련장 (바다·들·산), 산천수련장, 잔디수련장, 문화권수련장, 한국청소년신천지 등으로 분류하여 수려한 자연경관지역에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배치함.
- 생활권수련터전은 규모와 성격에 따라 수련원, 수련관, 수련의 집 수련소, 수련실, 수련방으로 분류하며, 행정구역 및 청소년분포도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함.
- 수련터전은 기존의 국·공유 및 민간터전을 기준에 따라 보완·활용하고, 신규터전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되, 민간투자를 지원·참여케 함.

(4) 청소년지도자의 제도적 양성·배치

- 청소년들에게 인격적으로 사표가 될 교사·교수 수준의 전문직업지도자를 제도적으로 양성하여 청소년수련터전에 배치함.

- 전문청 소년지도자는 「수사」로 호칭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자생적 청 소년지도자는 일정기간 연수후 「자원수사」로 함.

(5) 청소년단체의 적극 육성

- 기존 청소년단체의 내실화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적극 육성 발전시킴
- 청소년들이 단체를 통하여 자율적 수련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수련거리의 종류별로 전문화, 특화된 청소년단체의 설립을 촉진하고 지원함.

(6) 중장기 종합계획의 실효성 보장

- 청소년의 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와 동기 부여
 -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여부는 고유영역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으므로, 각급 학교의 학제, 교과과정,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야 하며, 직장, 병영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조치가 있어야 함.
 - 수련거리를 개발할때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심리적·과학적 요인을 깊이 고려하고, 주요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진학, 승진, 표창 등 각종 혜택과 연계되도록 함.
- 재원의 조달
 - 한국청소년 중장기종합계획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은 국고지원, 개인·단체 등 범국민적 참여와 부담으로 충당함.
- 각종 법령·제도의 개혁 보강
 -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혁·보강함.

(7) 범국민운동 차원으로 전개

- 한국청소년 중장기종합계획은 청소년 관련단체·기관, 관계전문가의 직접 참여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 함.
- 종합계획 실시에 따른 환경·제도·재원 등의 사회적 변화를 측정하고 국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사회영향평가를 실시함.

(8) 청소년정책의 일관성 유지

- 한국청소년 중장기종합계획은 「청소년건강육성 10개년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청소년부문」을 포괄하여 작성함.

제 3 장 정책 과제별 실천계획

제 1 절 수련거리(프로그램, 사업)의 개발 보급

〈개 요〉

- 수련은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계발하며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 활동으로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지식교육과 함께 필수적인 활동임.
- 수련거리는 수련에 필요한 행동프로그램 및 수련과 관련한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광범하고 다양하게 보급되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수 청소년단체, 관련기관 또는 개인이 개별적·산발적으로 개발·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 수련거리의 종류·수준 적용방법이 어떠한지 하는것은 그 시대의 청소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가느냐에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됨.
- 따라서 수련거리는 다수 보통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종합적·과학적·구체적으로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보급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함.

〈현황 및 문제점〉

- 지금까지 청소년의 여러가지 단계적 활동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말로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하나의 내용에 따른 단위적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화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의 사업까지도 포함하여 「수련거리」로 용어화함.

- 수련거리의 『거리』란 『소일거리, 할 거리, 걱정거리』 등으로 흔히 쓰이고 있으며, 어떤 행동이나 감정표현의 내용·소재가 되는 순수한 우리말로 『수련거리』란 종래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청소년 활동 사업을 총칭하는 용어로 청소년활동의 Soft Ware에 해당함.
- 우리나라의 청소년 수련 및 봉사활동은 대부분 일부 청소년단체나 관련기관 등에서 고유특성에 따라 계획·시행되는 수련거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개발·보급된 수련거리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자아개발, 가정생활, 시민생활, 사회봉사활동, 문화활동, 심신수련, 레크레이션, 국민의식개발, 국제이해 및 교류 등 그 종류가 다양함.
- 그러나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 일부 영세단체는 제정이 영세하여 청소년수련 및 봉사활동에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어 단순한 수련거리만을 답습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임.
- 청소년수련 및 봉사활동은
 -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련활동은 체육청소년부가 무직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련활동('90년 3,911명 실시)과 교육부가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야영활동 등('89년 400만명 실시)이 있으며, 청소년 개인적으로 청소년단체와 근로청소년회관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의 청소년수련 및 봉사활동은 체계가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학생청소년의 경우 입시위주의 학교교육풍토 등으로 인해 총학생수 884만여명('90.4.1 현재, 단, 국민학교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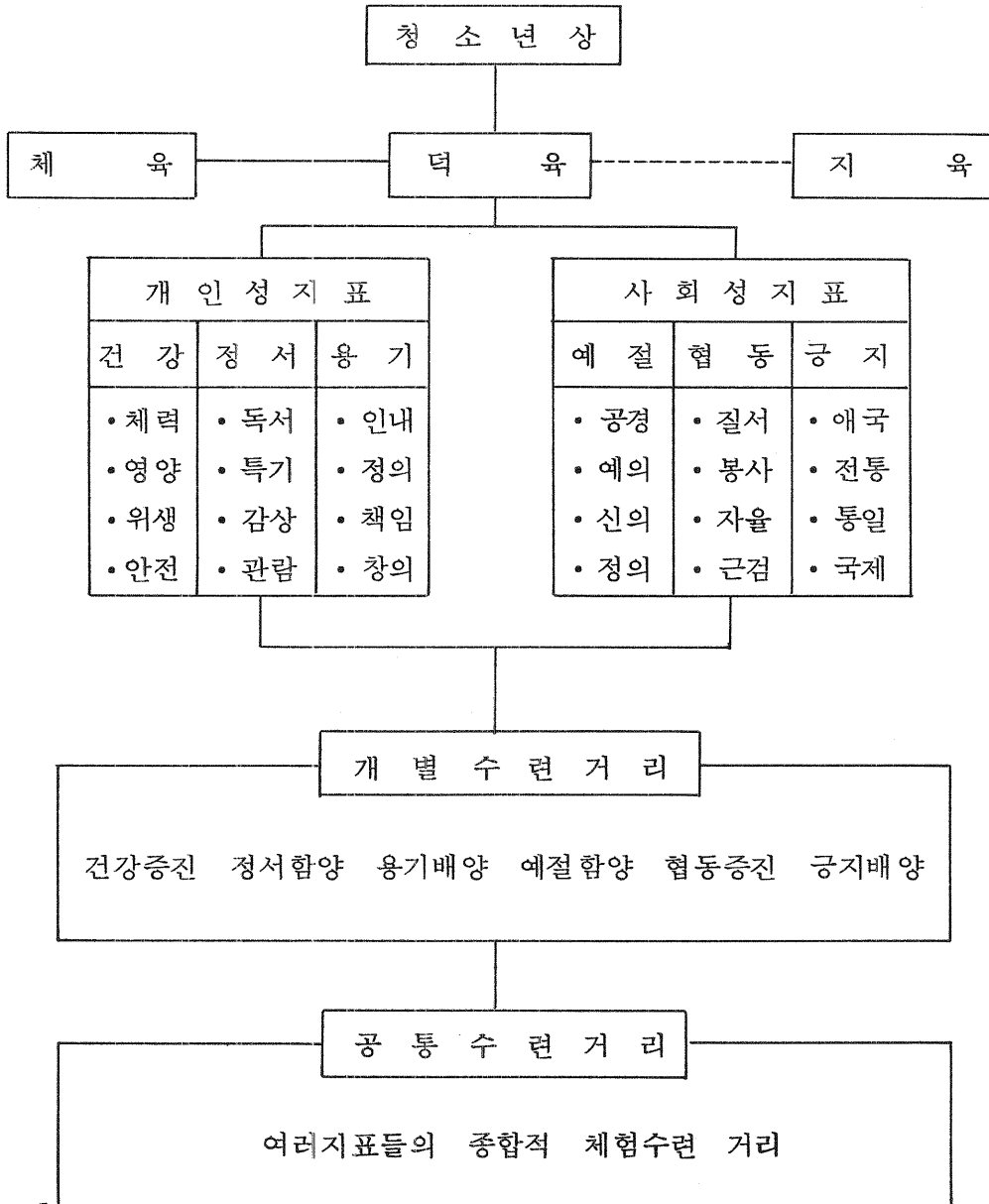
학년생은 제외하고 대학생은 4년제 대학생, 전문대생, 교육대생 만 포함한 숫자임)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편이며, 예산의 한계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수련활동도 미흡한 실정임.

< 추진방향 >

- 따라서 기존의 우수한 수련거리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수련 및 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시대변천에 따라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활동욕구에 부합될 수 있는 새로운 수련거리도 심리적·과학적으로 개발·보급함.
- 또한 수련거리의 종류, 수준, 적용방법이 어떠하느냐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청소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가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앞으로 수련거리의 개발·보급은 한국청소년상의 구현을 위하여 이 시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덕목 중심으로 수련지표를 연구·설정하고 이러한 수련지표에 따라 적용대상, 시기, 장소 등을 잘 고려하여 다수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함.

〈주요사업 계획〉

(1) 수련지표의 설정



- 한국청 소년상의 구현을 위하여 이 시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덕목형 6대 수련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수련거리 (프로그램 · 사업)를 다양하게 개발토록 함.
- 수련거리 (프로그램 ·사업)는 각 지표와 직접 관련된 개별수련 거리와 여러 지표들이 함께 관련된 공통수련거리로 구분하여 추진함.
- 그러나 어떠한 덕목을 지표로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덕목간의 상호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한 수련지표가 수련 및 봉사활동에 있어서 절대성을 지닐 수 없으나 여기서 수련지표는 이 시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덕목함양의 의미도 있으나 수련지표에 따른 수련거리의 개발 · 보급에 있어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데 더 큰 의미를 가짐.

(2) 수련방법

- 청소년수련활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생활권 활동과 자연 속에서 하는 자연권활동으로 구분함.
 - 생활권에서의 활동은 학교, 직장, 복무처의 수련시설이나 인근지역 수련시설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그 적성과 희망에 따라 수련거리를 선택하여 참여
 - 자연권에서의 활동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권을 떠나 대자연 속의 수련터전에서 종합적인 수련활동을 실시
- 이러한 수련 및 봉사활동은 우선 수련장소, 시설, 지도자 등 제반 여건과 대상청소년의 연령을 고려하여 개발 실시하되 청소년들이 가능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수련활동에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청소년들에게 흥미를 주고 매력을 줄 수 있는 우수한 수련거리의 개발·보급과 청소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련터전의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이나 근로현장 등을 떠나 수련 및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청소년의 62%나 되는 학생청소년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수련 및 봉사활동 실적을 입학성적에 반영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미국 하버드대학교 입학시험에서 한 수험생이 필기성적은 매우 우수하였으나 평소에 사회봉사활동을 참여해 본 실적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합격시키지 않았던 사실은 그 좋은 예로 볼 수 있음 (미국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은 풍부한 지식과 더불어 사회와 국가에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고에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음)

(3) 개별 수련거리

① 건강 증진 거리

- 체력을 기르고 영양을 개선하며 위생 관리와 안전훈련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 육성
 - 청소년 스포츠교실 활동 • 안전사고 대비훈련
 - 응급처치 훈련 • 청소년중식 관리
 - 청소년체조 개발·보급 • 청소년 머리방 설치
 - 청소년 건강보호원 설치 (안전, 위생, 유해요인에 대한 조사, 고발, 처리)

(예시)

구분	청 소년 스포츠교실활동	안전 사고대비 훈련
목적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한 체력 향상	일상생활 및 수련활동, 천재지변 시 예상될 수 있는 각종사고대비 능력 배양
대상	초·중·고, 학생청소년	초·중·고 및 대학생
장소	종목별 활동가능 시설 (수련실, 공공체육시설)	수련관, 수련실, 복무처내 시설
방법	－ 지역내 스포츠교실 가입 － 주 1 회 (2 시간) 이상 실시 － 인구밀집 도시지역 중심 운영 － 기존 체육동호인 조직과 연계실시 － 일정기간후 종목변경 활동 가능	－ 학교, 복무기관 자체 실시 － 연중 주 1 회 (2 시간) 실시 － 1 회 활동시 1 가지 안전사고 유형 대비 집중 수련 － 안전사고 대비훈련 지침 발간
내용	－ 초보적인 스포츠이론 경기 방법 및 실기 － 인근지역 스포츠교실팀과 친선경기	－ 화재, 교통, 수상사고 대비 － 등산, 감전, 항공사고 대비 훈련 － 홍수, 폭설 (풍), 산업재해 예방 등

② 정서함양거리

— 독서를 생활화하고 타고난 특기를 계발하며 각종 예·체능 활동 참여와 감상기회를 많이 갖게 하므로서 정서가 풍부한 청소년 육성

- 청소년 예능교실 활동
- 청소년 독서(교실) 활동
- 청소년 수련 여행
- 청소년 야외공연관람 활동
- 청소년 전용극장 설립
- 청소년 음악감상교실 활동
- 청소년 영화제작소 설치

(예시)

구분	청 소 년 예 능 교 실 활 동	청 소 년 수 련 여 행
목적	다양한 문예활동으로 취미활동과 여가선용을 생활화함.	건전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정서를 함양
대상	— 초·중·고, 대학생 — 무직청소년	— 초·중·고, 대학생 — 근로·무직청소년
장소	수련관, 수련실	여행의 집, 유스호스텔, 관광지
방법	— 음악, 무용, 미술, 문학, 연극, 사진, 서예 등 전반적 예술분야 포함 — 이론보다 실기위주 운영 — 학교 또는 집 근처의 예능교실에서 활동 — 일정기간 후 다른 분야로 변경 활동 가능	— 연중 1회(1박2일)이상 실시 — 희망자별 수련여행 회원제 운영 — 청소년여행 권장지역 개발 제공 — 가족단위 여행참가 권장 — 여행중 친교활동 병행 추진

구분	청 소 년 예 능 교 실 활 동	청 소 년 수 련 여 행
내용	－ 기초이론교육, 개인별 실습 － 분야별 전문가와의 만남 － 정기 발표, 전시회 개최	－ 문화유적지 답사, 자연친화활동 － 관광지 견학 － 친교활동 (오락게임, 토론) 등

③ 용기배양거리

－ 미지의 세계에 과감히 도전하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극복할 인내심을 기르고 정의감이 투철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창의적 활동에 적극적인 용기있는 청소년 육성

- 호연 훈련
- 청소년 장거리 행군
- 청소년 탐험 활동
- 청소년 수상 훈련
- 청소년 야간 산행 훈련
- 청소년 방법 활동

(예 시)

구분	호 연 훈 련	청 소 년 수 상 훈 련
목적	－ 자연조건 극복과정을 통해 인내심과 극기력 배양 － 대자연 체험으로 호연의 진취적 기상 진작	강과 바다의 생활체험을 길러 해양입국을 주도할 굳건한 의지와 용기 배양
대상	－ 모든 청소년 (학생, 근로, 복무, 무직)	－ 모든 청소년 (학생, 근로, 복무, 무직)
장소	전국 수련장내 극기훈련장	바들산 수련장 및 기타 가능 지역

구분	호 연 훈 련	청 소 년 수 상 훈 련
목적	- 연중실시, 1 회 (1 박 2 일) 이상 참가 - 특화단체를 통한 모집·운영·실시 - 난이도에 따라 종목별 순서단계 설정 - 활동시 조편성 개인별 실시 카드 배부	- 연중실시, 1 회 (1 박 2 일) 이상 참가 - 해양전문 단체 에서 모집·운영·실시 - 활동과정별로 개인활동 기록 관리·유지 - 활동집단별로 조를 편성 실시
내용	- 기본준비과정 (주의사항 준비 훈련) - 제 1 단계 실기 과정 (기초훈련) - 제 2 단계 실기 과정 (심화훈련)	- 기본준비과정 (안전교육·구급법·수영 기초이론 실시) - 단계별 실시 (스키, 카누, 카야크, 요트, 서핑 등)

④ 예절함양 거리

-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에게 예의와 신의를 지키며 모든 생활에 정직하고 예절바른 청소년 육성
 - 명절새기 활동
 - 전통예절대회 개최
 - 청소년가정 상호교환 방문
 - 예의범절 백과 발간·보급

(예 시)

구분	명 절 새 기 활 동	청 소 년 가 정 상 호 교 환 방 문
목적	전통예절을 비롯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절교육 실시하여 어른에 대한 공경심 함양	다른 가정을 방문, 상호교류로 생활환경체험 및 예의 함양
대상	초·중·고, 학생청소년	초·중·고, 학생청소년
장소	생활권내 수련관, 수련실	상호 방문 가정
방법	－ 연중 실시 1회 (1박 2일) 이상 참가 － 지역내 노인회관 등과 연계하여 활동 － 예의범절백과 발간 제공	－ 연중 실시 1회 (1박 2일) 이상 참가 － 활동취지의 대국민 홍보로 부모의 관심도 제고 － 동네, 이웃간, 지역간, 생활환경간, 학교간 교환방문 － 같은 연령 또래간 상호방문
내용	－ 인사 (큰절) 하기, 바른호칭 부르기 － 가훈실천, 가정생활 배우기 － 식사예절, 전통 의식주 체험 활동	－ 집안청소, 함께 공부하기 － 심부름 같이하기 － 가족과의 대화, 토론 등

⑤ 협동증진 거리

－ 질서를 지키고 이웃에 봉사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자율적이고, 근면·

검소한 생활습관을 길러 협동할 줄 아는 청소년 육성

- 도시·농촌청소년 교환 방문 • 청소년 사랑방 활동
- 청소년 교통봉사 활동 • 청소년 선행사례 발표회 개최
-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

(예시)

구분	도시·농촌청소년교환방문	청 소 년 사 랑 방 활 동
목적	다른 환경의 생활체험을 통해 견문확대와 협동심·봉사정신 고취	공동토론, 작업,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아는 상태에서 벗어나 협동·봉사하는 공동체의식 배양
대상	중·고등학생	초·중·고, 학생청소년
장소	방문 지역	청소년 수련방 등 활동가능 장소
방법	－ 지역실정 고려, 방문지역 선정 (농번기 일손부족 지역 등) － 시·도간 긴밀한 협조로 상호 교환방문단 편성 운영 － 연중 년 1회 (1박 2일) 이상 참가	－ 상설운영, 월 1회 이상 참가 － 청소년 연령별로 분반하여 활동 － 동일 연령에서 10명 단위 반 편성 － 동일반별로 배정된 시간에 참 여활동

구분	도시·농촌청소년교환방문	청 소 년 사 랑 방 화 동
내용	- 도시학생 : 모내기, 벼베기, 도로보수 - 농촌학생 : 양로원, 고아원 방문, 유명시설, 공공기관 견학 등	- 공동토론, 과제해결 토론 - 공동작업 (만들기, 필요집기 제작 등) - 지역봉사활동 (교통정리, 마을 청소 등)

⑥ 금지배양 거리

- 한민족으로 나라와 전통을 사랑하고 통일조국을 바라보며 국제사회를 주도해 나갈 금지있는 청소년 육성
 - 나라사랑 대행진
 - 세계 한민족 청소년 캠프
 -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
 - 청소년 역사연극 활동
 - 세계 민속발표회 개최
 - 전통민속 오락관 설치

(예시)

구분	나 라 사 랑 대 행 진	청 소 년 역 사 연 극 화 동
목적	국토종단행진을 통한 국토와 애국심 배양, 지도적 자질 함양	역사를 소재로 한 연극활동 참여, 관람으로 역사의식 고취
대상	- 중·고·대학생 - 근로청소년	초·중·고·대학생
장소	전국 활동가능 지역	수련관 및 학교내 가능시설
방법	- 하계 (6~8월) 중점 실시 1회 (10박 11일) 참가	학교당 년 1회 1개작품 이상 정기공연

구분	나 라 사 랑 대 행 진	청 소년 역사연극활동
방법	－ 한라산에서 임진각까지 행진 코스 설정 － 지역별, 대상별, 남녀별, 참가인원 조정 － 10명단위 행진조 편성 － 교통편 이용과 도보행진 병행 실시	－ 활동 참가인원이 수사를 중심으로 역사재현 소재 조사선정 － 시나리오 작성, 배역선정, 연습, 공연 － 홍보활동 적극전개로 사업효과 증대
내용	－ 도보행진, 야영, 등산, 해양활동 － 야영, 등산 － 해양활동, 오락게임 등	－ 연극공연 과정 설명 － 연극내용 설명(당시 사회환경 등) － 연극 이론교육 및 실연

(4) 공통 수련거리

①

대자연 속에서 건강·정서·용기를 배양하고 예절·협동·금지를 함양하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체험 훈련

○ 예시사업

1. 바들산(산천) 체험훈련

- 바다, 들, 산, 강이 있는 전국 바들산 또는 산천수련장에서 실시하는 자연체험훈련
- 훈련지침 제작 배포 및 사전교육으로 안전사고 대비 철저
- 등산, 행군, 자연보호활동, 야영, 친교활동, 교양강좌 및 각종 과정활동 종합 실시
- 연중(3~11월) 실시, 초: 2박3일, 중: 4박5일, 고: 6박7일로 대상과 연령에 따라 기간을 달리함.

○ 예시사업

2. 청소년 국토탐사

- 전국 11개 국토탐사로를 중심으로 지역권 연결 국토 탐사
- 연중 실시하며 대상청소년은 년 1회(6박7일 또는 2박3일) 이상 참가, 대학생 및 무직청소년은 희망에 따라 선택 참가
- 개인별 활동 실적 소속학교(기관)에 통보, 진학, 취업, 제대, 출감시 반영되도록 조치
- 자연생태조사, 산악행군, 분임토의, 야영, 오락게임 등 종합수련활동

②

조상의 숨결을 되돌아보고 세계속의 아름다운 한국문화를 익히고
발전시킬 동기를 부여하며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 예시사업 : 전국문화권 탐방

- 전국의 문화권을 탐방하여 한민족의 전통을 계승시키고 긍지를 배양
- 초·중·고 대상 연중 실시 1회(2박3일) 이상 참가
- 서울(올림픽 문화), 경주(신라문화), 부여(백제문화), 천안(항일문화), 충주(중원문화), 김해(가야문화)를 중심으로 활동
- 문화권내 시설유적지 견학, 보호활동 및 견문기 작성 발표

③

청 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열고 희망찬 내일의 설계를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대 축제

○ 예시사업 : 청소년 축제 한마당

-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문예활동 참여 및 관람기회 제공 : 국민적 관심도 제고
- 음악, 연극, 그림, 장기자랑, 오락게임, 시, 수필 등 모든 분야의 활동
- 작품 발표, 전시 및 유명공연단체, 연예인의 초청공연
- 분야별 우수작품 선정 시상함으로써 참여 분위기 고취

④

세계속의 한국의 위상을 직접 경험을 통해 알아보며 인류의 상호의존관계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 협조정신 배양

○ 예시사업 1 : “청 소년 의 해외 탐방선 ” 운영

- 동남아, 구미, 아프리카, 유럽 지역에 걸친 일정 코스를 선정하여 탐방
- 탐방국의 문화이해 및 상호 우의증진
- 순항중 각종 친교활동 및 해양활동 병행 실시
- 전용탐방선 건조 또는 기존 유람선·군함 등을 임차하여 해외탐방 실시

○ 예시사업 2 : 청 소년 해외봉사활동

-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인으로써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청소년 해외 봉사활동
- 적합한 해외봉사자를 선정하여 사전 교육 실시
- 한국의 문화 및 전통을 세계속에 전파시킴과 아울러 봉사참여자들의 해외개척정신 배양
- 청소년 해외봉사단을 조직·운영

⑤

민주시민으로서 상대방과 즐겁고 예의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 능력 배양

○ 예시사업 1 : 모의지방의회

- 지역내 주요사업 및 문제에 대한 토의 및 의사결정과정 실습으로 민주적 대화 자질 함양
- 연중 년 2 회 (1 회 : 4 시간) 이상 실시
- 의회별로 일정지역 설정하여 지역실태조사연구

- － 의제별 발표토의 및 대화·토론기법 교육
- 예시사업 2 : 과제토론 법정
 - － 과제에 대한 토의를 통해 대화기법 및 의사결정 능력 배양
 - － 연중 년 2 회 (1 회 : 4 시간) 이상 실시
 - － 대상청소년을 학년, 연령별로 토론반 구성
 - － 선정된 교재에 따라 조사·연구하여 발표·토론

⑥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노래·춤과 놀이를
개발·보급

- 예시사업 1 : 청소년 「어울노래」 개발
 - － 한국 청소년을 상징하고 언제 어디서나 즐겁게 부를 수 있는 「어울노래」 개발
 - － 청소년이 수련지표를 함양하면서 세계로 뻗어 나갈 진취적 기상을 깊게 담은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락에 맞게 개발
 - －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 연계하여 개발·추진
 - － 청소년 수련활동시 숙달하여 일상생활에서 부를 수 있도록 함.
- 예시사업 2 : 청소년 「어울춤」 개발
 - － 청소년이 수련활동시 다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춤을 개발
 - － 전통춤과 현대춤이 조화를 잘 이루고 우리 고유의 것으로 길이 살릴 수 있도록 개발
 - －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개발 추진

- 청소년 수련활동시 숙달하여 일상생활 각종활동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유도

○ 예시사업 3 : 청소년 「어울놀이」 개발

- 청소년이 생활주변에서 손쉽게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건전오락놀이 개발 (고스톱 대응)
- 연령별, 장소별로 적합하고 다양한 놀이를 개발
-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개발 추진
- 청소년 수련활동시 숙달하여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도록 유도

⑦

대중매체를 통하여 교양, 정서를 함양시키고, 날로 증가하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

○ 예시사업 1 : 청소년방송 실시

- 청소년 관련 영화·연극·연주·오락·교양강좌 등 특별기획물을 정기적으로 반영
- 일반 국민대상 프로그램은 청소년에 유익한 방향으로 제작 반영
- 청소년들이 직접 방송제작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자신들의 작품도 반영
- TV, 라디오, 유선방송을 관장하는 청소년방송국 설립

○ 예시사업 2 : 월간 『청소년수련』지 발간

- 청소년대상 수련활동, 진로지도, 취업 및 취학 등에 관한 제반정보를 총망라하여 수록

- 청소년들의 창작 문예작품 및 유명인사의 우수작품도 병행 게재
- 청소년출판공사를 설립하여 월간지 발간
-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단체 등에 보급

⑧

수련거리는 이를 활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 주기적으로 분석·보완하여야 하며 개인고충에 대한 상담은 그것 자체로서, 올바른 해결방법이 될수도 있는 중요하고 광범위한 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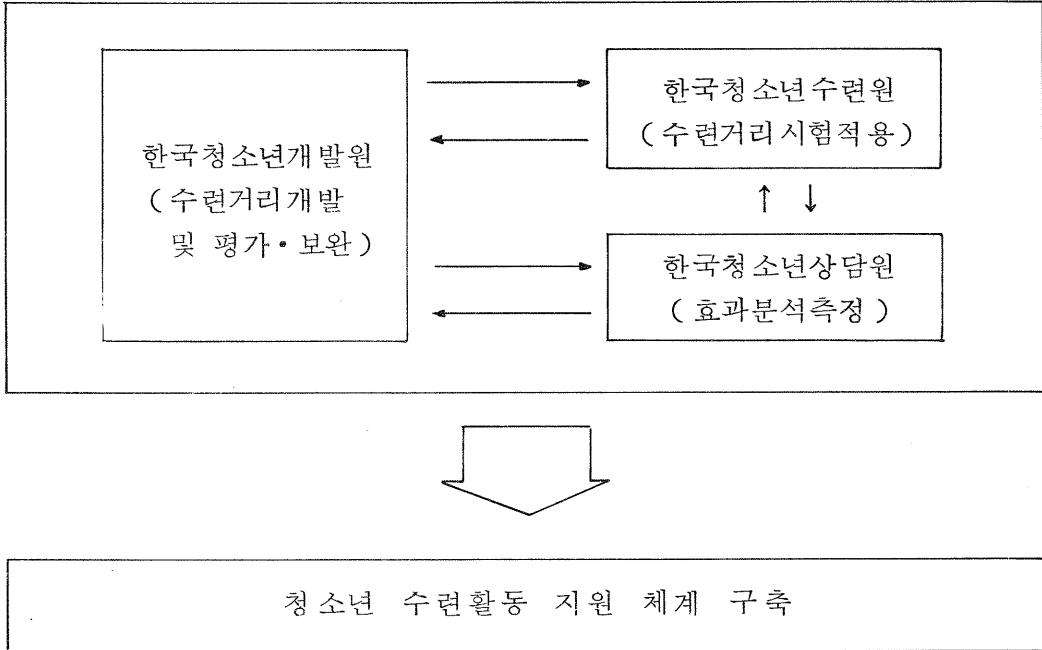
○ 예시사업 1 : 지방청소년 상담 사업

- 지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전문상담 실시
- 지역내 청소년 관련 상담활동에 대한 총괄·지도
- 시·도 및 시·군·구의 수련원, 수련관, 수련실 등에서 기능 담당
- 전문 상담원 배치

○ 예시사업 2 : 중앙 청소년 상담 지원 사업

- 전문상담원의 최고양성 기능
- 전문상담원의 정기 연수 기능
- 청소년 상담기술연구 교범편찬 보급기능
- 청소년 임상심리치료·요양기능
- 전국 청소년 상담기능 운영의 총괄조정 기능

(5) 수련거리의 개발, 보급



- 수련거리의 종류와 내용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대상, 연령, 시기, 장소 등에 적합하게 종합적, 과학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주기적으로 평가·보완 개발시킴
- 개발된 수련거리는 한국청소년수련원에서 시험·적용하고 그 결과를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제공함.
-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평가·보완한 수련거리를 총망라하여 수록한 수련교범을 발간하여 학교, 직장, 복무처와 전국 수련시설에 배치하고 이에 따른 수련표를 수련시설 등에서 제작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함.
- 수련표에 따라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 상담원이 지방청소년 상담실에서 보내온 상담자료를 분석하여 수련거리의 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제공함.

제 2 절 수련터전의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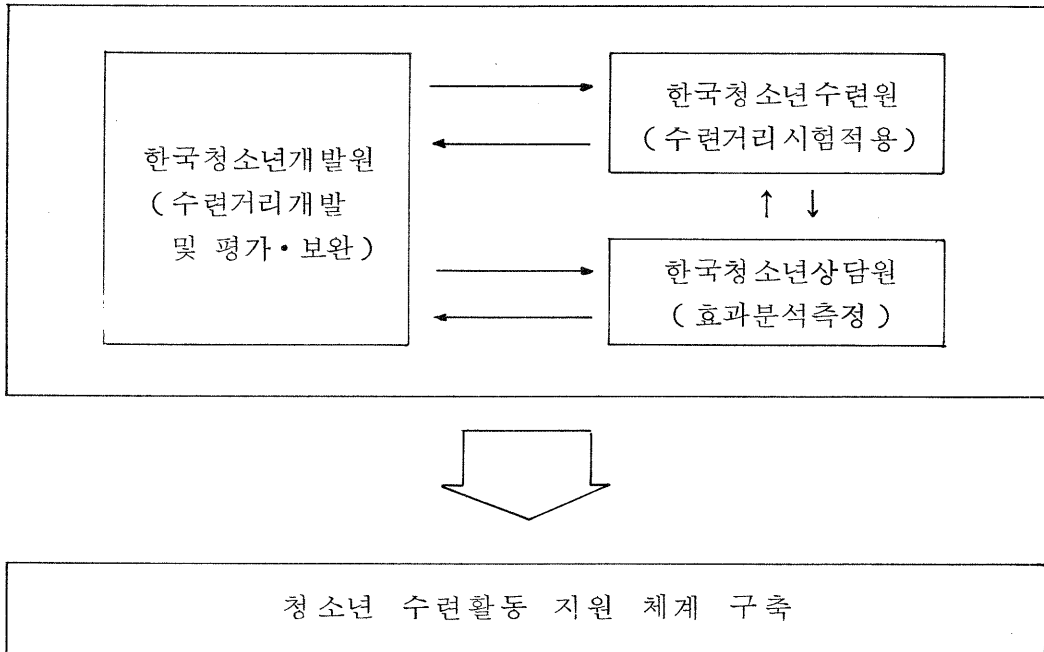
〈개 요〉

-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대자연 속에서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을 기르고, 일상생활 속에서 더불어 사는 지혜와 공동체의식을 체득하는 수련활동이 절실히 요청됨.
- 그러나, 오늘날 개인의 영리추구, 국가의 정책의지 미흡으로 1,364 만 청소년의 수련터전이 되어야 할 금수강산이 기성세대의 향락·레포츠형 시설침투와 각종 자연 파괴 행위로 날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으며,
- 학교와 직장을 나서면 각종 유해 환경으로 둘러싸여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곳이 없는 실정임.
- 이에 청소년 수련거리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련장소, 시설, 설비를 확보하고자 함.

〈현황 및 문제점〉

- 수련터전의 『터전』이란 자리를 잡고 앉은 곳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 말이며 『수련터전』이란 청소년 심신단련과 자질계발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 설비』를 총칭하는 용어로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Hard Ware 에 해당하는 용어임.
- 우리 청소년들은 요즈음 꿈과 희망이 없고 놀 곳도 없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는 입시위주 교육과 바쁜 직장생활과 그리고 생활주변에 청소년만을 위한 시설과 공간의 부족 등 복합적요인에서 기인함.
- 따라서 학업과 근로와 병행하여 청소년들이 생활주변에서 마음껏 뛰놀고 자질을 개발하며 정서를 키우고 건강을 증진시킬 시설이 필요함.

(5) 수련거리의 개발, 보급



- 수련거리의 종류와 내용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대상, 연령, 시기, 장소 등에 적합하게 종합적, 과학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주기적으로 평가·보완 개발시킴
- 개발된 수련거리는 한국청소년수련원에서 시험·적용하고 그 결과를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제공함.
-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평가·보완한 수련거리를 총망라하여 수록한 수련교범을 발간하여 학교, 직장, 복무처와 전국 수련시설에 배치하고 이에 따른 수련표를 수련시설 등에서 제작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함.
- 수련표에 따라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지방청소년상담실에서 보내온 상담자료를 분석하여 수련거리의 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제공함.

제 2 절 수련터전의 확충

〈개 요〉

-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대자연 속에서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을 기르고, 일상생활 속에서 더불어 사는 지혜와 공동체의식을 체득하는 수련활동이 절실히 요청됨.
- 그러나, 오늘날 개인의 영리추구, 국가의 정책의지 미흡으로 1,364 만 청소년의 수련터전이 되어야 할 금수강산이 기성세대의 향락·레포츠형 시설침투와 각종 자연 파괴 행위로 날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으며,
- 학교와 직장을 나서면 각종 유해 환경으로 둘러싸여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곳이 없는 실정임.
- 이에 청소년 수련거리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련장소, 시설, 설비를 확보하고자 함.

〈현황 및 문제점〉

- 수련터전의 『터전』이란 자리를 잡고 앉은 곳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 말이며 『수련터전』이란 청소년 심신단련과 자질개발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 설비』를 총칭하는 용어로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Hard Ware 에 해당하는 용어임.
- 우리 청소년들은 요즈음 꿈과 희망이 없고 놀 곳도 없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는 입시위주 교육과 바쁜 직장생활과 그리고 생활주변에 청소년만을 위한 시설과 공간의 부족 등 복합적요인에서 기인함.
- 따라서 학업과 근로와 병행하여 청소년들이 생활주변에서 마음껏 뛰놀고 자질을 개발하며 정서를 키우고 건강을 증진시킬 시설이 필요함.

○ '91.1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시설 현황은 총 331 개에 불과한 실정임.

－ 청소년 전용시설 보유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야영장	심 신 수련장	자 연 학습원	청소년 회 관	학 생 교육원	학 생 과학관	유 스 호스텔	놀 이 마 당	야 간 공부방
합 계	331	72	56	9	33	15	12	18	8	108
서 울	64	3	3	-	11	4	-	3	4	36
부 산	20	3	2	-	2	-	1	2	2	8
대 구	15	2	1	-	3	1	1	-	1	6
인 천	6	1	-	1	1	-	-	-	-	3
광 주	7	-	-	-	2	-	1	-	-	4
대 진	7	-	1	-	1	-	-	-	-	5
경 기	51	12	19	-	4	1	2	4	-	9
강 원	26	7	7	1	1	2	1	3	-	4
충 북	31	13	7	1	1	1	1	2	-	5
충 남	22	9	4	1	-	1	1	1	-	5
전 북	20	8	2	1	2	-	1	1	1	4
전 남	14	5	2	1	-	1	-	-	-	5
경 북	13	4	-	1	1	1	1	1	-	4
경 남	19	4	5	1	1	1	1	-	-	6
제 주	16	1	3	1	3	2	1	1	-	4

— 청소년이용시설 현황 (전국 3,037 개소)

('90.12월 현재)

구 분		개소수	운 영 내 용	비 고
체 육 시설	운동장	180	• 각종 체육대회 및 경기활동 • 지역사회주민 체력증진	자료 : '90 체육청소년 통계연보 (학교, 직장체육시설 제외)
	수영장	40		
	체육관	133		
	체육공원	389		
	로울러스케이 트장	9		
	야구장등기타 시설	166		
	소 계	917		
문 화 시설	국·공립도서 관	199	• 도서대출, 열람, 교양, 취미, 교육 학습공간 제공	자료 : 문화부 『문화공간현황』 '90
	박물관	300	• 청소년문화행사 개최 • 박물관 교실운영, 전통문화강좌	
	미술관 (화랑포함)	285	• 우수미술작품의 수집, 보존 전시교육, 연구조사 • 청소년 문화강좌 및 음악회, 무용 연극 등의 공연 • 청소년 미술강좌 개최	
	문화예술회관	16	• 완공 (6개소) • 진행중 (10개소)	* 진주, 구미, 제주, 수원, 부산, 대구
	과학관	2	• 과학기술전시 • 청소년탐구 프로그램 운영	자료 : 과학기술처

구 분		개소수	운 영 내 용	비 고
	소 계	802		
복지 시설	사회복지관	88	• 지역사회 영세가정 자립지원 사업 전개 • 청소년상담실, 청소년독서실, 취미 교실 운영	자료 : 보사부 '90
지역 사회	시·군·구민 회관	80	• 지역사회주민 교양강연, 발표, 전시, 각종 집회 『청소년광장』 개최	자료 : 내무부, 서울시
공공 시설	국민생활관	1	• 지역사회 주민의 교양증진, 체력 향상, 문화활동, 청소년 수련사업 전개	자료 : 체육청소년부 총 15개소중 1개소 (청주) 완공
	소 계	81		
공원 시설	도시공원	1,046	• 도시자연공원 174 • 근린공원 872	자료 : 건설부 『건설통계 편람』
	자연공원	65	• 국립 20, 도립 20, 군립 25	
	소 계	1,111		
기타 시설 교	농·어촌폐(분)	44		자료 : 교육부
총 계		3,037		

- 우리나라의 청소년시설을 외국청소년 시설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숫적으로 크게 부족하고 규모가 영세함. 일본의 경우 청소년시설은 국립올림픽종합센터 (1), 국립남장왕 야영장 (1), 국립청년의 집 (13), 국립소년자연의 집 (11), 공립청년의 집 (248), 공립소년자연의 집 (160), 아동문화센터 (27), 공민관 (17,520), 근로청소년홈 (580), 전국청소년회관 (11), 근로청소년후랜드쉽센터 (4) 농촌청소년활동촉진시설 (168), 유스호스텔 (488), 청소년여행촌(80) 등 총 19,302개가 있음 ('90 청소년백서, 일본국).

국 명	한 국	일 본	독 일
1인당 시설 보유면적	0.02 m^2	0.7 m^2	* 주민 1인당 체육시설면적 : 1.4 m^2
시설보유 비율	청소년 41,200 명당 1개 시설	청소년 1,521명 당 1개 시설	* 주민 1,000 명당 1개 체육시설

< 추진방향 >

-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방향을 일상생활권내에 청소년수련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대자연 속에도 자연체험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에 두고 시책을 추진함. 일본의 경우에도 일상생활권시설 (공민관, 근로청소년홈, 도시공원 등) 과 광역권시설 (청년의집, 소년자연의집, 유스호스텔 등) 로 구분하여 각종 시책 추진하고 있음.
- 먼저 지역단위 청소년활동의 중심체 기능을 수행할 청소년수련원을 건립 우리열배우기집, 예절관, 전시실, 음악감상실, 숙박시설,

독서실 등을 짓고 여기에 전문 청소년지도자와 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단계별로 확대 건립함.

- 전국 시·군·구 단위에는 수련원보다 규모가 적은 청소년수련관과 민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스포츠교실, 오락실과 같은 수련실을 건립하고
- 청소년들이 젊음을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청소년수련실을 건립함.
- 이밖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도시영세민 지역 청소년에게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야간공부방, 놀이방 등의 청소년수련방을 읍·면·동 단위에는 설치할 계획임.
-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자연과 벗삼아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함양이 절대 필요함에 비추어 대자연 속의 청소년수련시설도 지속적으로 건립함.
- 장기적으로는 한국청소년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거 위와 같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함.

〈주요사업 계획〉

(1) 기존 수련터전 활용도 제고

- 청소년을 건전하게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활동프로그램과 아울러 이를 전개할 무대격인 청소년시설 마련이 전제가 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시설비용의 과다, 민간의 청소년시설 투자 기피(비영리성), 정부예산의 한정 등으로 신규시설 건립은 여

러가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우선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에도 역점을 두어 청소년수련에 적합한 기존 시설현황을 종합 조사한 후 청소년수련시설로 보완 활용함.

- 문화시설, 체육시설, 여유있는 군부대시설, 유휴공공시설 등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시설 개보수비용 일부에 대한 용자를 확대 추진하며
-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거리, 수련터전 편람을 제작 보급하고
- 특히 이들 시설에 전문 청소년지도자를 배치함.

- 나아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빌딩, 체육관, 임야, 농지 등을 청소년수련사업을 위해 제공하고자 할 때는 능동적으로 이를 수용함.

- 지원방법과 절차

- 정부가 뜻있는 민간(개인, 기업체, 단체)에 수련터전 제공 희망자 모집→민간의 응모→심사후 지원자 및 지원규모 결정→각종 지원실시

- 지원대상

- 청소년수련 및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제공한 생활권내의 민간 보유시설
- 청소년수련 및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제공한 자연권내의 임야, 농지 등
- 민간이 건립하는 유스호스텔

— 지원내용

금 융 지 원	기존시설 개보수비 및 신규시설비 일부 용자
재 정 지 원	지역과 청소년분포 감안 예산과 청소년육성기금내에서 일부 지원
세 제 지 원	토지초과이득세,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등 감면 (법인 설립유도)
행 정 지 원	시범수련터전으로 지정, 시설명칭에 수련터전 제공자 성 명사용, 우수프로그램 및 지도자 지원

— 근거 : 청소년육성법 제 12 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생활권내 수련터전 확충

- 청소년시설은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바람직한 청소년상 정립을 기할 수 있도록 그 유형을 정하고 각종 기준을 설정하여 장기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행정구역별, 청소년분포별로 시설모형을 다음과 같이 개발함.

종 류	향후 10년 간 필요 개 소 수	설 치 지 역	설 치 기 준
청소년 대전당	1 (3)	수도권	- 입지조건 : 청소년정책연구, 수사교 육연수, 청소년수련, 상담 등 총 체적 기능수행이 가능한 지역 (청 소년개발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상담원 입주) - 부지면적 : 60 만평 - 건물 총면적 : 3 만평
수련원	15	시·도청 소재 지	- 입지조건 : 해당시·도내 청소년의 이용이 용이하고 복합 덕목수련 및 여가활동시설 설치가능 지역 - 연면적 : 개소당 4,000 평
수련관	1,666	• 시·군·구 (271 개소) • 학교 (1,395 개 소)	- 입지조건 : 해당학교 및 지역내의 이용이 용이하고 복합 덕목수련 및 여가활동시설 설치가능 지역 - 연면적 : 시·군·구 : 개소당 2,000 평 학 교 : 개소당 1,000 평
수련의 집	662	시·군·구 및 자연권	- 입지조건 : 청소년여행 및 휴양활동 에 적합한 지역

종 류	향후 10년 간 필요 개 소 수	설 치 지 역	설 치 기 준
			－ 연면적 : 1개소당 200평－1,878 평
수련소	775	도시근교 및 자연권	－ 입지조건 : 청소년자연체험활동에 적합한 지역 － 연면적 : 개소당 378평－1,818평
수련실	2,710	시·군·구	－ 입지조건 : 청소년개별덕목수련 및 봉사활동에 적합한 지역 － 연면적 : 개소당 200평
수련방	10,632	읍·면·동 (3,544개소)	－ 입지조건 : 청소년개별 덕목수련 및 봉사활동에 적합한 지역 － 연면적 : 개소당 50평

- 이중 문화시설, 공공시설, 개인보유 민간시설 등 7,290개소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신규시설을 9,173개소 건립하는 총 16,463개의 시설을 향후 10년 이내에 건립할 계획임.

(3) 자연권 수련터전 확충

- 자연권 속에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고 호연지기를 함양할 수련터전을 대폭 확충하여 자연체험활동 등 수련거리를 실시해 나감.
- 자연경관과 지형고려하여 전국적 균형배치를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형을 개발

종 류	향후 10년간 필요 개소수 (251개)	기 준
국토탐사로	11	○ 자연경관수려지역을 거점으로 산악, 계곡, 하천, 해안을 연결한 이동수련이 가능한 지역 (총 2,600 만평)
바들산 산천수련장	90	○ 바다, 들, 산, 하천, 호수 등을 구비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청소년자연체험활동에 적합한 지역 (3 만평내외)
산천수련장	143	○ 내륙지역에 산과 들, 하천, 호수 등을 구비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수상 및 산악수련과 봉사활동에 적합한 지역 (3 만평내외)
잔디수련장	50	○ 도시근교에 위치하여 잔디, 숲, 물을 구비한 1일 또는 2일 수련 및 봉사활동에 적합한 지역 (15,000평내외)
문화권수련 장	6	○ 문화, 역사유적지를 구비한 청소년 공지함양사업에 적합한 지역 (6,000 평내외)
한국청소년 신천지	1	○ 청소년수련과 오락 등 여가에 관한 종합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자연보존 상태가 양호한 한반도 중심지역 (750 만평 내외)

- 이와 같은 자연권 수련터전은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뜻있는 민간의 참여 하에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함.

- '90년부터 매년 3개소씩 건립하고 있는 청소년야외수련장을 점차적으로 확충하여 야영장, 등산로, 모험시설, 극기훈련장, 숙박시설 등을 배치함.
- 장기적으로는 국토탐사로, 바들산수련장, 신천수련장, 잔디수련장, 문화권수련장의 지정 운영으로 청소년자연체험활동의 활성화도모함.
- 외국의 예로는 일본의 청년의 집, 소년자연의 집, 자연공원, 대규모 자전거도로 등을 들 수 있는데, 국립청년의 집은 부지 63,000평, 건물면적 3,600평으로 자연경관이 가장 좋은 지역선정 하여 건립하며 문부성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13개, 86년도 숙박자수 100만명) 이는 1960년대말 “대자연속 청소년수련시설의 획기적 확충”을 국가중요시책으로 선정하여 중점투자한 결과임. 또한 프랑스의 청소년야외활동센터, 휴가코로니와 독일의 제3차 골든플랜에서 자연권내에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함을 목표로 정한 바 있다.

(4) 수련터전 확보 방안

- 국가확보
 - 기존 국·도·군립 공원 일부 청소년전용장소로 책정
 - 각종 행위제한 완화, 청소년 수련시설 집중배치
 - 행정구역별 국공유지 무상사용
 - 해당 지역에 국·도·군립 공원이 없고 대신 수련적지가 있는 지역대상
 - 국토개발차원에서 임도 동시 개설 (외국 예 : 서독)

○ 민간확보

- 법인·단체·개인의 참여유도를 위하여 규제적 관련법규개정
 - 도시계획법, 산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 규제법 등
- 관광단지, 신도시, 공동주택단지 신규개발시 청소년 수련장소의 무적 할당
- 뜻있는 민간기업, 개인이 제공한 수련장소 확보
 - 매년 공모접수후 국가가 심사 결정
 -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관리

○ 수련장소는 유스벨트 (Youth Belt)로 지정 영구히 보존

- 산림, 동·식물보호 및 자연애호 수련사업 동시 전개
- 관련법령제정, 청소년 유해 행위 엄금

(5) 수련터전의 이용관리 계획

① 수련터전 이용

- 모든 청소년에게 수련터전을 개방함.
 - 인근지역 청소년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수용능력 감안 타지역 청소년도 이용 가능
 - 수련효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어른도 이용 가능케함.
- 수련터전 이용에 따른 비용은 최소 실비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어려운 청소년에게는 국가가 별도 지원
- 개인, 씨클, 단체, 학교, 직장, 기관별로 사전에 신청·접수·통보 절차를 밟아 이용함.

② 수련터전 관리

- 수련공간, 수련시설의 확보 주체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체

육청소년부에서 “수련터전 관리운영 총괄 지침”시달

-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 국가에서 일부 지원
- 위탁관리, 주민관리, 법인관리제도 등의 도입으로 관리운영의 신축성 도모
- 수련터전 관리자의 신의·성실의무 준수
 - － 영리추구 배제, 청소년 수련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관리 운영
 - － 폐기물관리, 위생관리, 자연보전관리, 이용자사고방지, 시설안전관리 등 준수사항 이행

제 3 절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개 요〉

- 수련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인격적으로 사표가 될 지도자가 절대 부족하며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대우의 소홀로 유능한 지도자의 확보가 곤란한 상태임.
- 청소년 수련거리를 전담할 전문지도자의 체계적인 양성이 절실한 실정임.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관련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함께 참여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품성계발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상담 등의 일일 생활권내 현장지도,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의 계몽 및 환경정화 활동 등을 그 주요 임무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청소년지도자의 개념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별도로 분류되거나 정의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행정실무의 편의상 “청소년단체소속 지도자” 및 “청소년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활동을 하는자”를 신 분별, 소속별로 구분 파악 관리하고 있음.
- 청소년지도자 현황은 청소년담당 시·도공무원, 소년경찰, 학교내 교도교사 등 공무원 8,400여명, 청소년단체지도자 (224,000여명), 청소년지도위원 (58,000여명) 및 갯생보호위원 등 민간지도자 328,000여명으로 현재 총 33만여명이 활동하고 있음.

— 청소년지도자 현황

(1990.12.1 현재)

구 분		소 관	인 원
합 계			337,237
공 무 원	소 계		8,434
	지 방 공 무 원	내 무 부	3,801
	소 년 경 찰	//	684
	소 년 원 교 수	법 무 부	146
	감 별 관	//	27
	보 호 관 찰 관	//	31
	교 도 교 사	교 육 부	2,785
	아 동 복 지 지 도 원	보 건 사 회 부	315
	부 녀 상 담 원	//	645
민 간 지 도 자	소 계		328,803
	청 소 년 단 체	각 부 처	223,643
	청 소 년 육 성 위 원	체 육청소년부	5,007
	청 소 년 지 도 위 원	//	58,135
	소 년 선 도 위 원	법 무 부	5,197
	갱 생 보 호 위 원	//	10,845
	보 호 위 원	//	4,441
	종 교 지 도 위 원	//	226
	방 문 지 도 위 원	//	374
	경 찰 선 도 위 원	내 무 부	8,963
	학 교 상 담 봉 사 자	교 육 부	3,000
	아동복지시설봉사자	보 건 사 회 부	3,554
	아 동 위 원	//	5,418

〈추진방향〉

- 우수한 청소년지도자의 육성이야말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현재 심각하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임.
- 청소년단체 및 시·도와 협조하여 현재 파악된 전체 청소년지도자 33만여명중 일선에서 직접 청소년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단체지도자 및 담당공무원, 청소년지도위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강사진과 교과과정을 마련하여 내실있고 체계적인 지도자연수를 년차적으로 확대 실시함.
- 장기적으로는 한국청소년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문연수 기능을 갖춘 연수원을 설립하여 제도화된 교사, 교수 수준의 청소년 전문지도자를 배출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질적, 양적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임.

〈주요사업 계획〉

- 수사양성계획

(단위 : 명)

계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77,000	-	1,000	1,000	5,000	10,000	15,000	15,000	15,000	15,000

- 본 계획에 의한 수사배출시까지 기존 단체를 연수기관으로 지정, 일정 자격요건 구비자 재교육으로 수사기능 대행

- 수사 배치

- 청소년 수련활동 현장에 수사의무 배치 : 총 77,000명

－ 배치기준

- 학 교 : 11,160 개교 × 5 명 = 55,800 명
- 직 장 : 1,000 개사업체 × 1 명 = 1,000 명
- 병 영 : 2,265 부대 × 1 명 = 2,265 명
- 교 정 시 설 : 23 개 × 10 명 = 230 명
- 청소년단체 : 200 개 × 10 명 = 2,000 명
- 청소년시설 : 3,121 개 × 5 명 = 15,605 명

○ 청소년지도자 (수사) 의 구분과 자격

구	분	자	격
수 사 (자격제도)	1 급	• 2 급 수사 자격을 취득하고 청소년수련활동에 5 년이상 종사자	
	2 급	• 정규대학을 졸업하여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2 년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청소년수련활동에 2 년이상 종사자 • 3 급 수사자격을 취득하고 청소년수련활동에 4 년이상 종사자	
	3 급	•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1 년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자원수사 (등록제도)	자원, 수사	• 각종 기능별 보유자로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소정 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노인 · 주부 · 퇴직교사, 지역 모범청장년 등 활용	

제 4 절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개 요〉

- 기존 단체들의 영세성과 비전문성으로 청소년 단체활동이 미약한 실정임.
- 비슷한 연령의 청소년들이 모인 집단속에서 그들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유할 수 있는 사회교육적 집단활동을 조장하고 기능별로 전문화된 단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함.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청소년단체는 총 40개 단체로서 청소년단체의 협의기구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동 협의회에 가입된 31개단체 동 협의회에 미가입된 8개단체가 있음.
- 청소년단체 가입회원수는 2백 10 만여명이며 이는 전체 청소년인구 1천 3백 6십여만명의 15%에 해당함.

— 청소년단체 현황

구 분	계	회원단체	비회원단체	비 고
단 체 수	40	32	8	청협 포함

— 청소년단체 회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인원	청 소 년 지 도 자					기 타
		정회원	준회원	상근	비상근	자 원 봉사자	일반, 특별, 가족회 원 등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31 개 회원단 체)	4,731,195	2,166,720	2,073,188	3,303	220,340	113,279	154,365

〈추진방향〉

-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시설의 확충은 물론 우수한 프로그램의 보급 및 지원과 지도자의 양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제반지원책을 확대해 나감.
- 특히 30여 청소년단체의 협의체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조직을 개편 강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청소년단체간의 상호 협조체제를 공고히 해나갈 계획임.
- 청소년의 단체활동을 비회원 청소년에게도 권장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단체활동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
- 청소년단체 관장부서 일원화를 통해 청소년단체의 균형적인 지원, 육성과 지도, 감독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단체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

- 아울러 청소년단체 간에 우수프로그램을 상호 교류토록 하고, 국내·외 행사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체육,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청소년단체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함.

〈주요사업 계획〉

- 기존 청소년단체의 내실화 도모 및 단체활동 지원 강화
 - － 단체 지도·감독 기능을 체육청소년부로 일원화
 - － 수련사업 실시 우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지원 방향 전환 (단체규모 중심에서 사업내용 중심으로)
 - － 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 강화
 - 전용회관 확보 (회원단체입주), 사무국 대폭 확대 개편
 - 15개 시·도에 지부 설치
- 청소년 수련거리별로 전문적 특화단체 설립 (200개 목표)
 - － 청소년의 단체가입 참여·활동으로 건전육성 및 비행 사전예방
 - － 단체설립 준칙마련 민간의 자율설립 유도
 - － 종합계획 6대지표 달성을 위한 구심체 역할

※ 전문특화단체 조직 (안)

구분	기 능	단 체 수
건강	체력향상, 위생, 영양 등 건강함양사업과 안전교육 등	청소년안전교육협의회 등 20개
정서	자연체험활동을 통한 정서 함양사업 등	청소년바들산수련협의회 등 40개

구 분	기 능	단 체 수
용 기	모험심, 인내심 배양	청소년국토탐험연맹 등 40개
예 절	공경·예의, 신의 함양	전통예절선양회 등 40개
협 동	단체놀이·봉사활동 등	청소년 도·농교류봉사단 등 30개
금 지	나라사랑·국제이해 등	해외청소년봉사단 등 30개
계		200개

○ 연차별 특화단체 설립계획

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	6	12	25	25	25	25	20	20	20	22

제 5 절 남북한 청소년 동질성 회복

<개 요>

-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갖고 있었던 한민족은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희생물이 되어 반백년의 분단상태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지녀왔던 지역, 문화, 역사적 경험 등의 동질성이 점점 더 상실되어 가고 있음.
- 따라서 선진·민주·통일조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남북한 모든 국민, 특히 청소년들의 동질성 회복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

<현 황>

- 북한 청소년 개요
 - 연령 : 5세 ~ 29세
 - 청소년인구 : 1,206 만명 (총인구 2,156 만명의 56%)
 - 청소년단체
 - 소년단 (7 ~ 14세 약 350 만명)
 -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15 ~ 30세 학생, 직장인 380 만명)
 - 붉은 청년근위대 (고등중학교 이상 전원 약 85 만명)
- 북한 청소년 인구

(단위 : 만명, %)

계	5 - 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1,206	251	234	222	207	292
100 %	21	20	18	17	24

○ 남·북한 청소년 생활형태 비교

- 기본생활방식에 대하여 인간의 개성이 존중되고, 자신의 삶과 행복을 추진하며, 사회적으로 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청소년에 비하여 북한 청소년들은 개인보다는 단체, 사회, 국가를 우선시 하며 민족통일혁명을 통하여야 만 가능하다고 하여 인간의 합목적성을 부인함.
- 가정생활에서의 가정은 사회, 국가 구성의 기초이며 인간적 삶의 공간으로 인식처로 우리 청소년은 인식하고 있으나, 북한 청소년은 당적과업을 촉진하는 매개체로서 가정을 인식함.
-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직장을 선택하는데 반하여 북한에서는 당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함.
- 개성이 존중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윤리와 도덕이 강조되고 전통을 존중케 하고자 하는 반면, 북한 청소년들은 유일사상인 김일성 숭배를 최고의 규범, 가치로 인정하고 있음.
- 남·북한의 교육과 수련활동을 비교하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자아실현을 위한 지식교육위주인데 비하여 북한 청소년들은 공산주의 원리에 따른 정신무장과 군사적인 신체활동요구로 보다 투쟁적인 인간화가 되고 있음.

〈문 제 점〉

- 남·북한 상호간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불신 팽배
- 각기 다른 언어생활과 독자적인 생활형태로부터 파생된 역사, 문화 등 이질화

〈추진방향 및 사업〉

- 쌍방 청소년 당국자 회담 제의
- 기존 청소년 행사에 상호 초청
 - － 세계 잼버리대회, 세계 한민족 청소년 행사 등
- 남·북한 공동행사 창설 추진
 - － 남·북청소년 어울놀이, 청소년 대행진 등
-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 개선
 - － 어문정책 접근, 통일교육 실시, 시청각 자료 및 학생작품 교환 등
- 전체활동
 - － 청소년지도자 상호교환, 국제행사 공동참여 등
- 공동학술연구사업 전개
 - － 어문정책, 역사, 문화 등 공동조사 연구
- 기술훈련 지원
 - － 영농·축산기술, 의료기술, 기능공 훈련 등 협조

제 6 절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개 요〉

- 청소년관련업소 총 320,908개소 중 유해업소는 187,170개소로 27%나 차지하고 있으며, 업체종사자의 많은 수가 무급종사자로 변태서비스 조장함.
- 방송매체는 청소년의 정서함양,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고 청소년을 위한 흥미있고, 교육적인 프로그램 부족함.
- 인쇄매체는 음란, 폭력만화 등 말초적인 흥미본위로 편집하여 청소년의 정서를 침해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연장소에서 판매되고 있음.
- 동시에 기성세대의 윤리의식이 해이해져 있으며 각종 사회매체의 자율적 규제기능도 상실되어 청소년은 유해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현 황〉

- 유해사회환경 유형별 분류

구분	업 소	방송매체	정기간행물	공 연 물	음반및비디오	기 타
관련 법규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방송법 유선방송 관리법	정기간행물 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공연법	음반 및 비 디오물에 관한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구분	업 소	방송매체	정기간행물	공 연 물	음반및비디오	기 타
업종	- 유흥음식점 - 대중음식점 - 이용업 - 전자오락실 - 숙박업 - 목욕탕업 - 유기장업 - 다방·찻집	• TV방송 • 국 • 라디오 • 방송	• 일간신문 • 월간신문 • 계간신문	• 영화 • 소극장	• 음반 및 비디오 판매업 • 비디오 대여업	• 만화대여업 • 안마시술소
유해 행위	• 미성년자 출입 묵인 • 주류 및 담배제공 • 심야영업 • 음란비디오 상영 • 도박 • 사행성영업 • 퇴폐, 폭력 오락기구 설치	• 선정적 광고 • 외래폭력물방영 • 호화사치 광고 • 비교육적 방송내용	• 음란퇴폐 만화대여 • 외국문화 무분별 도입 • 폭력물 기사게재	• 선정적인 공연 • 음란·폭력물 모방 • 범죄유발 • 외래영화 무분별 상영	• 불법외국 비디오 판매 및 대여 • 폭력, 음란비디오 테이프 판매, 대여	• 음란비디오 상영 • 밀실설치 • 음란·폭력 만화대여

구분	업 소	방송매체	정기간행물	공' 연 물	음반및비디오	기 타
단속 및 규제 방법	• 검찰합동 단속반 - 검찰, 경찰공무원 • 위생감시원	• 방송심의위원회 - 자율	• 간행물 윤리위원회 - 자율 - 규제 • 신문윤리위원회 - 자율규제	• 규제방법 - 미흡	• 검찰단속 • 민간단체의 불법 음반추방 캠페인	• 경찰단속

○ 청소년 유해업소

- 관련업소 총 320,908개소중 유해업소는 187,170개소로 27%나 차지
 - 청소년 출입목인, 주류판매, 변태, 퇴폐서비스제공, 음란비디오 상영 등
- 업체종사자의 많은 수가 무급종사자로 변태서비스 조장
 - 주점 16.7%, 카바레 35.8%, 요정 26%, 숙박업 2.5%
-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상존 ('89년도 8,788개소)

○ 방송매체

- 청소년의 정서함양,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배려 미흡
 - 초저녁시간 성인오락물 방영, 삼각관계 묘사, 폭력, 외설장면 방영 등
- 청소년이 흥미있고, 교육적인 프로그램 부족
 - 애정물, 폭력물, 오락물 등 성인프로그램 위주 방영

○ 인쇄매체

－ 간행물 윤리위원회 심의결과('89년도)

- 총 28,118건 심의결과 8건 제재 또는 삭제로 형식적 심의
- 만화심의 총 6,426건 중 48건 폐기 대부분 심의통과

－ 성관련 추문, 스캔들의 대서특필로 청소년 정서 침해

－ 음란, 폭력만화 등 말초적인 흥미분위로 편집

－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판매

○ 청소년유해관련 단속업소 현황

업소별	계	대중중 음식점	유 흥 음식점	이용 업소	전 자 오락실	숙박 숙소	비 디 오 판매업소	만화 가게	비고
전체	320,908	200,689	17,892	29,351	15,003	31,676	17,939	7,753	
유해 관련	17,034	2,188	3,083	900	5,507	1,018			

※ 자료 : 대검찰청 및 보사부 ('89.12 현재)

○ 업소별 유해행위 내용

업 소	유 해 행 위 내 용
유해업소, 간이주점	미성년자 출입목인 및 주류제공,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 등
만화가게	심야영업, 연초제공, 음란비디오상영, 음서, 음화 대여
다방, 인삼찜집	미성년자 출입목인 및 주류, 연초제공, 심야영업, 음란비디오 상영
유기장 (전자오락실, 당구장)	도박사행성영업, 미성년자 성인오락실 출입, 심야영업

○ 약물오·남용 실태

- 약물 오·남용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약물을 계속해서 오용 (약물의 원래 의도된 목적과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 할 때나, 그 사람이 약물의 사용에 대해 통제할 수 없을 때, 혹은 약물 복용이 개인의 가족, 직업 및 기타 사회적 기능 수행능력에 장애를 가져올 때를 말함 (아래참조).

약물 오·남용의 개념 정의

내 용	약 물 사 용	약 물 오 용	약 물 남 용
치료적 기능	있음	없음	없음
약물의존성 (지속성)	없음	있음	매우 큼
신체적 장애	극히 적음	있음	매우 큼
사회적 기능장애	없음	있음	매우 큼

-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특히 여학생의 흡연, 음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약물 사용의 경우에는 술, 담배 등의 가벼운 약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점차 강도가 높은 각성제, 안정제, 대마초, 마약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문 제 점>

○ 기성세대의 윤리의식 해이

- 건전여가 스포츠 보다 향락, 퇴폐적 서비스 선호 경향
- 자기 가족 이외의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 팽배
- 투철한 직업관과 윤리의식의 결여

- 자율적 규제기능 상실
 - 동종매체간의 심한 경쟁유발로 지나친 상업주의 초래
 - 각종 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 미흡 (공연윤리위원회, 방송, 광고, 영화, 간행물윤리위원회 등)
- 기존법령 및 행정 규제력의 약화
 - 미성년자 보호법상의 각종 규제사항 불이행 방지
 - 학교보건법에 지정된 정화구역의 유명무실 등
 - 토지공법상의 토지용도구역 혼재
 - 유흥음식점의 업종별 구체적인 허가기준 결여
-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무방비상태로 노출
 -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이 용이하고, 악덕업주는 청소년을 고용
 - 유해인쇄매체로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판매
 - 가정에 비디오 보급이 급증하여 청소년 접촉용이 ('89년 현재 약 260만대)
- 업소관련 청소년 유해요인 심화
 - 유흥업소, 간이주점, 청소년출입, 미성년자 고용
 - 다방, 인삼찜집 청소년출입, 변태영업행위
 - 유키장예의 청소년출입 및 사행성 행위
- 대중매체 관련 청소년 유해요인 확산
 - TV의 저속, 퇴폐, 폭력성 프로그램 및 광고
 - 신문의 성, 폭력 관련 무차별 대서특필 및 선정적 광고 남발
- 영상, 인쇄매체 관련 청소년 유해요인 심화
 - 음란영화, 비디오, 도서, 만화와 과다노출, 선정적 광고 남발

- 유해성 약물 제조 구입 용이 및 부작용 확산

〈추진방향 및 사업〉

- 유해환경요인 순화방안
 - “업소, 대중매체, 영상, 인쇄물”의 유해요인 순화를 위한 관계 부처 협조체제 구축
 - 청소년에 유익한 영화, TV프로 등 “불거리와 놀터전”확충
- 방송, 영화, 정기간행물,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업종별 심의위원회 기능 보강
 - 매체별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회 의	구 성	주 요 기 능
방 송 심 의 회	방송심의위원회	주 2회	심의위원 9명	방송내용의 사후 심의
	TV 영화심의 소위원회	주 2회	심의위원 8명	TV영화의 사전 심의
	광고심의소위원회	주 2회	심의위원 9명	광고방송의 사전 심의
공 연 윤 리 위 원 회		기관별 1회	위 원 15명	영화, 비디오, 음반 및 기타 공연물 사전 심의
간 행 물 윤 리 위 원 회		월 1회	위 원 33명	도서, 잡지, 주간신문, 만화의 사후 심의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월 1회	위 원 12명	일간신문, 게재기사 및 광고의 사후 심의

- 법적규제의 강화
 - 학교주변 정화구역내 유해환경 척결 및 불법제작물의 지속적 단속
 - 토지용도구역의 엄격한 실시
 - 유흥업소 출입자에 대한 신분확인 의무화
 - 유해요인 신고, 단속체계 보강을 위한 청소년 관련 공무원의 단속권 부여 방안강구
 - 유해성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강화
- 종교단체, 소비자단체, 청소년단체의 자생적 운동을 통합, 지원
- 청소년의 건전여가활동, 수련활동을 위한 공간의 대폭 확충

제 7 절 어려운 청소년 지원

<개 요>

- 시설보호청소년, 소년, 소녀가장, 빈곤가정청소년 등
 - － 일반시민 월평균 생계비에 못미치는 지원 (1인당 월 90천원 정도)
 - － 교호시설 및 부랑아 시설 등이 단순한 일시보호에 국한된 시설운영
 - － 소년·소녀가장 및 극빈가정 청소년의 경우 주거대책 없음.
- 요지원 청소년 (비진학 미취업, 빈곤청소년)
 - － 주거불명 및 수시변동으로 정확한 인원파악 곤란
 - － 학력 비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 지원대책 미비
 - － 소규모 영세업소 등의 근로청소년 보호대책 미비
- 조기진로변경 요망 청소년
 - － 편향된 학력 위주의 국민의식과 좁은 대학, 취업문으로 연간 약 25만명의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발생
 - － 직업훈련기관의 절대 부족 및 육체노동의 기피현상

<현 황>

- 어려운 청소년 현황

구 분	보호시설수용 청 소 년	소년·소녀가장	영세가정 (결혼) 청 소 년	무직청소년
인 원	• 240 개시설 21,142 명	• 6,694 세대 13,782 명	• 6,079 명	• 13,255 명
법 규	• 아동복지법 • 생활보호법	• 생활보호법	• 생활보호법	• 생활보호법
대상 및 지원내용	• 주거가 없거 나 보호할 필 요가 있는 청 소년 • 학교교육, 직업보도훈 련	• 부모가 없는 청소년 • 1인당 월지원 액 국교생 54 천원, 중학생 76천원, 고교 생 93천원, 기타 52천원	• 편부·편모슬 하 청소년 • 복지시설수용 또는 자매결 연 후원	• 재수생, 군입대 대기자, 결혼 대기 여성 및 취업의사가 있는 청소년 제외 • 취업훈련비 월 5만원 지원

－ 아동복지시설 수용현황

구 분	합 계	영 아 (3세 미만)	소 계	유 아 (18세 미만)	직업보도 (12세 이상)	교 호 (18세 미만)	자립지원 (18세 이상)
시 설 수 (개)	278	38	240	223	7	7	3
수용자수 (명)	23,612	2,470	21,142	20,221	468	396	54

－ 보호대상

- 주거가 없거나 보호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18세 미만의 자
- 보호시설에 수용중 18세가 지나는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연장 수용가능함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직업보도, 훈련시설에서 훈련중인자, 심신장애자로서 귀가, 취업이 곤란한 20세미만인 자) .

－ 소년·소녀가장 현황 (재학별)

합 계	국 교	중 학	고 교	대 학	비진학	비 고
13,782명 (6,694세대)	3,703	4,026	3,014	75	2,964	

－ 영세가정 청소년 개관

가구수	가 족 수	청소년추계	결손가정 (편부·편모) 청소년
601,150	2,045천명	626천명	6,079명

－ 무직 청소년 현황 (학력별)

계	무학	국퇴	국졸	중퇴	중졸	고퇴	고졸	대퇴·대졸
13,255 (100%)	263 (2%)	433 (3%)	1,320 (10%)	1,679 (23%)	3,410 (26%)	1,517 (11%)	4,423 (33%)	210 (2%)

〈문 제 점〉

- 보호시설 수용청소년에 대한 형식적 지원과 18세 이후의 대책 미흡으로 사회문제 소지 지속
-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 미흡
 - － 90년 2/4 분기 도시가구 1인당 월평균 소비지출 161,000 원에 못미치는 93천원 정도 지원 (결연지원금은 1세대당 월평균 100천원으로서 세대원이 많은 경우 혜택은 미흡)
 - － 부모의 일실로 인한 심리적 고충 심각, 사회적응력 부족
- 결손가정 청소년들에게는 소년·소녀가장에 비하여 학용품비, 교통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등 지원은 안되고 있음.
- 영세가정 (결손) 청소년의 전반적 실태 파악 및 총괄적 관리 미흡
- 무직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 미흡과 사회무관심으로 탈선 소지 잠재
 - － 저학력 무기능으로 인한 취업난
 - 학력이 낮고 기능이 없어 취업하기가 힘들며 취업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이나 생산직종사로 이직 예상
 - － 대상자 파악과 총괄적 관리 미흡

〈추진방향 및 사업〉

- 보호시설수용청소년
 - － 생계비 증액지원 및 자매결연의 지속적 확대 (보사부, 내무부)
 - － 보호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 (보사부)
- 소년·소녀가장

- 소년·소녀가장 돕기 구좌 확대 (보사부)
 -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 등 증액 지원
- 일반가정과 자매결연 적극 추진 (내무부)
 - 기업체 및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과의 결연, 지원 구좌 확대
 - 일반가정과 자매결연 적극 유치로 부모적 보살핌 유도
 - 소년·소녀가장 이모, 외삼촌 맺기운동 등 전개
- 격려 및 수련기회 확대로 사회적응력 제고
 - 보사부, 내무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구
- 소년·소녀가장이 소속된 기관 (학교, 직장 등)에서 구체적 지원 방안 강구
- 영세가정 (결손) 청소년
 - 영세가정 (결손) 청소년의 격려, 수련기회 부여
 - 결손가정 청소년에 대하여도 학용품비, 교통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등을 지원
 - 격려 및 수련기회 부여로 자긍심 고취
 - 보사부, 내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협조체제 강구
- 무직청소년
 - 대상자 정밀조사 및 체계적인 지원, 관리방안 강구
 - 격년 1회 전면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체육청소년부)
 - 지원대상자 개별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 관리 및 매분기별로 정기적 조사를 실시하여 변동사항 정리 (내무부)
 - 취업위주 수련거리 개발 실시로 사회진출 지원 (체육청소년부)

- 직업훈련 실시 및 취업알선 등 취업기회 확대 (노동부)
- 방송통신학교, 기술학교, 사회교육시설 등 각종 학교에 취학알선
(교육부)

제 8 절 비행청소년 관리

<개 요>

- '89년말 현재 범죄소년, 촉법소년, 불량행위소년 24 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0.5%, 청소년인구의 1.8%, 총범죄자의 8.1%에 해당함
외국의 약 3%에 비하면 통계적으로는 적은 숫자임.
- 청소년범죄의 동기를 보면, 우연한 범죄자 31.3%, 유흥비 조달 8.5%, 취중이 7.3%로 아무 목적의식 없는 범죄행위자가 47.1%로 적극적인 청소년정책이 없을 경우 범죄청소년 증가가 우려됨.
- 전체청소년의 활동 조장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비행청소년 발생을 장기적·근원적으로 예방하고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규제·교화업무는 내무부·법무부·체육부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관계법령의 개혁, 시설·환경의 개선 및 행정지원업무 강화를 도모함.

<현 황>

- 비행청소년의 법률상 구분
 - 범죄소년 : 14세이상 20세미만의 청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자으로써 형사책임을 묻는다.
 - 촉법소년 : 12세이상 14세미만의 청소년으로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이나 형사 미성년자로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우범소년 : 12세이상 20세미만의 청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가정에서의 이탈 또는 범죄성이 있거나,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는 등의 사유로 장래 범법할 우려가 있는자 현재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미성년자보호법상의 불량행위
소년으로 대체하여 법적용을 하고 있음.

- 불량행위소년 : 20 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음주, 꺾연, 흥기소지, 싸
움, 부녀희롱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풍
기문란행위자 (일명 풍기사범)

○ 비행청소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범죄소년	촉법소년	불량행위소년
'90 (집 정)	279,153	106,076	3,176	169,901
'89	240,658	108,015	1,661	130,982
증 감	38,495	- 1,939	1,515	38,919
증 감 율	16	- 1.8	91.2	29.7

○ 소년범죄 유형별 추이 ('88, '89대비)

(단위 : 명%)

구 분	계	강 력 범	폭 력 범	재 산 범	기 타
'89 (구성비)	108,015 (100)	5,588 (5.2)	50,757 (47.0)	26,893 (24.9)	24,777 (22.9)
'88 (구성비)	104,052 (100)	4,771 (4.6)	45,120 (43.4)	28,587 (27.5)	25,574 (24.5)
증가율 ('88 대비)	3.8 %	17.1 %	12.5 %	△ 5.9 %	△ 3.1 %

○ 총범죄 대비 소년범죄 구성비

(단위 : 명, %)

구 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잠정)
총 범죄	1,005,892	1,041,887	1,113,612	1,144,802	1,337,587	1,479,179
소년범죄	102,225	106,355	97,849	104,052	108,015	106,076
구 성 비	10.2	10.2	8.8	9.1	8.1	7.2

○ 청소년범죄 동기별 현황('89, 대검찰청)

(단위 : 명, %)

구분	계	생활비	유혹비	허영 ·사치	사행심	원한 분노	취중	우연	유혹	가정 불화	기 타
인 원	107,819	2,333	9,211	2,252	3,088	5,021	7,890	33,703	1,884	151	42,286
구성비 %	100	2	8.5	2.1	2.9	4.7	7.3	31.3	1.7	0.1	39.2

- 청소년 범행동기는 우발적 행동이 31.3%로 가장 많아 환경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
- 총 청소년범죄 중 재범자는('89년 22.4%) 최근 증가세로 비행관리의 중요성 증대

<문 제 점>

- 관련법규가 청소년 현실 급변에 미처 따르지 못함.
 - 범죄소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12세미만 관련법규 부재
 - 법령은 있으나 시설·여건 등 후속조치 미흡으로 사문화 현상
(예 : 소년법 30조에 의한 단계별 청소년선도 및 교정제도)

- 청소년 연령에 대한 법조문 불일치로 체계적인 정책시행 차질
(예 : 민법 • 선거법 20세, 청소년육성법 24세, 아동복지법 18세 미만)

○ 유해환경제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유발행위의 근원이 되는 유해업소 단속근거 미비
- 매스컴, 출판물, 광고 등의 유해요인에 대한 강력규제장치 미흡
- 정부시책간 불일치로 정책 효과 격감 사례빈발

(예 : 유해업소인가 남발과 강력단속 반복 등)

○ 소극적, 단기적, 행정적 차원의 대책 중심

- 건전 환경조성 위한 장기목표 추진보다는 처벌과 일시적 행정단속
- 도시위주, 문제가 없는 학생중심 사업으로 비진학, 농촌, 근로, 결손, 저소득청소년 대책 소홀

○ 비행청소년에 대한 단계적 • 체계적 선도장치 결여

- 소년감별소 및 소년원 시설미비, 운영의 과학성, 전문성 부족
- 선도 교정후 사후보호 및 관찰대책 미비로 사회복귀실패 빈발
- 규제적 수단서 치중, 교육적 노력 미약으로 교정 • 갱생효과 적음.

〈추진방향 및 사업〉

- 12세미만 대상 법제도 정비
- 철저한 교육적 선도 및 낙인의 최소화
- 소년원 -보호자간 중간보호기구의 확충
- 비행청소년 감별 및 선도기능의 전문화 • 과학화
- 소년원의 특수교육기능 강화
- 비행청소년 교정시설의 확충

제 4 장 계획의 추진단계

제 1 절 도달목표

- 한국청소년 중장기종합계획은 현행제도 및 여건하에서는 성공적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본 계획의 목표달성 연도인 2001년까지를 준비기〈1991 ~ 1992〉, 확산기〈1993 ~ 1996〉, 발전기〈1997 ~ 2000〉로 3 단계 구분 추진하며, 정착기인 2001년 이후부터는 대다수 보통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며 즐길 수 있는 청소년 낙원국가로서 세계속의 청소년모범, 선진국가를 이룩토록 함.
- 한국청소년 중장기종합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5대 정책 과제별로 분류, 단계별, 우선순위별로 추진하여 10개년(1991 ~ 2000년)기간동안에 완수함.

제 2 절 정책과제별 추진단계

과제 1 대다수 보통청소년 수련활동의 생활화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 수련거리 개발 • - 과정표 작성 • 대상별 • 연령별 - 시험단 선정, 표 - 본 • 실시 (시 • 도 - 단위별 각 7개 집 - 단선정)	• 표본실시 결과분석 • - 보완 • 대상별 • 연령별 확대 - 실시 (20 %)	• 집단유형별 확대실 - 시 (80 %)

과제 2

기존시설의 활용도 제고 및 수련터전 (장소·시설) 의 단계적 확보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 기존 수련장소 및 시설 보장 활용 (50 %) • 한국청소년대전당 (개발원, 수련원, 상담원) 확보 • 신규 수련장소 및 시설 확보 (16 %)	• 기존 수련장소 및 시설보강·활용 (50 %) • 신규 수련장소 및 시설 확보 (36 %)	• 신규 수련장소 및 시설 확보 (48 %)

과제 3

기존 청소년지도자 연수활용 및 전문지도자 (수사), 자원봉사자 (자원수사) 양성·배치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 기존 청소년지도자 연수 활용계획 수립·시행 • 청소년 단체·지도자육성 지원법 제정 • 한국청소년개발원법제정 및 관계법령 개정	• 수사 및 자원수사 양성·배치 (30 %) • 기존 청소년지도자 연수 활용·배치	• 수사 및 자원수사 양성·배치 (70 %)

과제 4

기존 청소년단체 정비·보강 및 기능별 전문 특화단체 설립 추진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 기존 단체 지원·보강 • 수련지표·기능별 전문화 특화단체 설립 (10 %)	• 수련지표 기능별 전문화 특화단체 설립 (50 %)	• 수련지표 기능별 전문화 특화단체 설립 (40 %)

과제 5

청소년기본법 제정 등 관계법령 개폐 및 학제, 입시제도, 교과과정, 근로시간 조정 등 제도개혁 보강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 법령 및 기구정비계획 수립시행 • 청소년기본법 제정 • 청소년관련 개별법률제정 • 청소년관련 주요법령 정비 (10 개) • 청소년육성세법 신설 • 교육제도·임금제도 및 근로환경 등 제도 개선	• 청소년 관련 주요 법령개폐 (52 개)	• 청소년 관련 주요 법령개폐 (196 개)

제 3 절 단계별 추진일정

과 제	주 요 추 진 내 용	준비기	확 산 기					발 전 기				정착기
		←제 7차 5개년계획→					←제 8차 5개년계획→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1. 수련 활동 실시	○ 수련거리개발, 과정표 작성 ○ 대상별, 연령별 시범단 선정 • 표본실시 ○ 수련과정 표본실시 결과분석 보완 ○ 대상별 •연령별 확대실시 (20 %) ○ 집단유형별 확대실시 (80 %) ○ 대다수 보통청소년의 수련활동 생활화											
2. 수련 터전 확보	○ 시설 (기존 •신규) 실태조사 •분석 ○ 기존 수련장소 및 시설보강 (50 %) ○ 한국청소년대전당 (개발원, 수련원 상담원) 설치확보 ○ 신규 수련장소 및 시설확보(16%) ○ 기존수련장소 및 시설보강활용 (50 %) ○ 신규 수련장소 및 시설확보 (36%) ○ 신규 수련장소 및 시설확보(48%)											

과 제	주 요 추 진 내 용	준비기		확 산 기				발 전 기				정 착기
		←제 7차 5개년계획→						←제 8차 5개년계획→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3. 수사 양성 배치	○ 기존청소년지도자 연수활용 계획 수립 시행 ○ 기존 청소년지도자 연수배치 ○ 수사 및 자원수사 양성배치(30%) ○ 수사 및 자원수사 양성배치(70%)											
4. 단체 정비 및 특화 단체 설립	○ 기존단체 정비보강 ○ 수련지표 기능별 전문화 특화단체 설립 (10 %) ○ 수련지표 기능별 전문화 특화단체 설립 (50 %) ○ 수련지표 기능별 전문화 특화단체 설립 (40 %)											
5. 법령 제정 및 제도 개혁	○ 법령 및 기구정비계획 수립 ○ 청소년기본법 제정 ○ 청소년관련 개별법령 제정 ○ 청소년관련법령 정비(10개) ○ 청소년육성세법 신설 ○ 교육 및 근로환경 등 제도 개선 ○ 청소년관련 주요법령 개폐 (42개) ○ 청소년관련 주요법령 개폐 (196개) ○ 청소년 모범·선진국 이룩											

參 考 資 料

자 료 목 차

1. 청소년 인구현황	87
가. 분포별	87
나. 연령별	87
다. 지역별	88
라. 학생청소년 현황	89
2. 청소년 지도자 현황	90
가. 청소년 지도위원 현황	90
나. 청소년 지도자 현황	91
3. 청소년단체 현황	92
가. 청소년단체별 청소년 및 지도자 현황	92
나. 청소년단체별 국제교류 실적	94
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95
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국제교류 현황	97
4. 청소년 전용시설 현황	101
가. 시·도별 시설 보유현황	101
나. 설치 주체별 보유현황	102
5. 정부 부처별 청소년육성 관련 업무현황(총괄)	102
가. 청소년육성 관계기관 일람표	102
나. 부처별 주요 청소년육성 업무분장 현황	107
다. 정부 부처별 청소년 관련사업 및 예산 현황	109

6. 청소년 관계법령 현황	114
7. 청소년 범죄 현황	148
가. 총 범죄대비 소년범죄 구성비 (연도별)	148
나. 소년범죄 연령별 상황	149
다. 연도별 학생범죄 현황	149
8. 각급학교 개황	150
9. 시설강습소 개황	151

1. 청소년 인구현황

가. 분포별

(단위 : 천명)

계	학 생	근로청소년	무직청소년	기타 (군·경기타)
13,641	8,437	2,385	580	2,238
100 %	62 %	17 %	8 %	17 %

나. 연령별

(단위 : 천명, %)

구 분	총인구	청 소 년 인 구				
		계	9세	10 ~ 14세	15 ~ 19세	20 ~ 24세
전 국	42,380	13,641 (100.0)	813 (6.0)	3,974 (29.1)	4,565 (33.5)	4,289 (31.4)
남 자	21,359	7,033 (100.0)	420 (6.0)	2,049 (29.1)	2,351 (33.4)	2,213 (31.5)
여 자	21,021	6,608 (100.0)	393 (5.9)	1,925 (29.1)	2,214 (33.5)	2,076 (31.4)
성 비	101.6	106.4	106.9	106.4	106.2	106.6

자료 : 추계인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9)

다. 지역별

(단위 : 천명, %)

구 분	총 인 구	청 소 년 인 구			
		계	10~14 세	15~19 세	20~24 세
전 국	42,380(100.0)	12,828(100.0)	3,974	4,565	4,289
서 울	10,513(24.81)	3,215(25.06)	907	1,136	1,172
부 산	3,754(8.86)	1,169(9.11)	342	411	416
대 구	2,206(5.20)	717(5.59)	196	251	270
인 천	1,604(3.79)	448(3.49)	135	148	165
광 주	1,165(2.75)	418(3.26)	130	148	140
경 기	5,466(12.90)	1,424(11.10)	451	462	511
강 원	1,663(3.92)	506(3.94)	173	187	146
충 북	1,356(3.20)	416(3.24)	136	153	127
충 남	3,008(7.10)	971(7.57)	310	359	302
전 북	2,118(5.00)	708(5.52)	232	270	206
전 남	2,540(5.99)	831(6.48)	281	320	230
경 북	2,846(6.72)	806(6.28)	282	299	225
경 남	3,636(8.58)	1,036(8.08)	347	363	326
제 주	505(1.19)	163(1.27)	51	59	53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9)

라. 학생청소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인 원 수	비 고	
총 계		8,437,024(3,814,122)	※국민 학교 3 - 4 학년 중 9세미 만인 805,346 명은 제외	
국민 학교	3 학년	52,737(25,209)	* 3 - 4 학년 중 9세미 만인 3학년의 802,505 명 4학년의 2,841 명인 총 805,346 명은 제외	
	4 학년	841,378(408,087)		
	5 학년	846,379(411,130)		
	6 학년	757,022(367,531)		
	소 계	2,497,516(1,211,957)		
중 학 교	1 학년	760,590(370,191)		
	2 학년	731,630(352,947)		
	3 학년	783,531(380,084)		
	소 계	2,275,751(1,103,222)		
고 등 학 교	인문계	1 학년	491,099(214,502)	
		2 학년	490,710(214,935)	
		3 학년	491,346(215,655)	
		소 계	1,473,155(645,092)	
	실업계	1 학년	272,631(142,843)	
		2 학년	268,986(142,804)	
		3 학년	269,034(142,440)	
		소 계	810,651(428,087)	
	소 계		2,283,806(1,073,179)	
대 학 교	전 문 대 학	323,825(119,345)	* 대학생 중 25 세이상은 전문대학이 12,815 명 교육대학이 2,757 명 대학교가 128,407 명으로 총 143,979 명임	
	교 육 대 학	15,960(10,290)		
	대 학 교	1,040,166(296,129)		
	소 계	1,379,951(425,764)		

* ()는 여학생 숫자임.

2. 청소년 지도자 현황

가. 청소년 지도위원 현황

시 • 도	지 도 협 의 회	지 도 위 원	비 고
서 울	494	7,747	
부 산	222	3,169	
대 구	137	2,165	
인 천	106	1,971	
광 주	92	1,725	
대 전	77	1,083	
경 기	407	5,825	
강 원	222	3,618	
충 북	157	2,797	
충 남	205	3,350	
전 북	267	4,165	
전 남	324	5,478	
경 북	380	6,004	
경 남	419	8,301	
제 주	43	737	
계	3,552	58,135	

나. 청소년 지도자 현황

1990. 9. 1 현재

구 분		소 관	인 원
합 계			337,237
공 무 원	소 계		8,434
	지 방 공 무 원	내 무 부	3,801
	소 년 경 찰	//	684
	소 년 원 교 사	법 무 부	146
	감 별 관	//	27
	보 호 관 찰 관	//	31
	교 도 교 사	교 육 부	2,785
	아 동 복 지 지 도 원	보 건 사 회 부	315
	부 녀 상 담 원	//	645
민 간 지 도 자	소 계		328,803
	청 소 년 단 체	각 부 처	223,643
	청 소 년 육 성 위 원	체 육청소년부	5,007
	청 소 년 지 도 위 원	//	58,135
	소 년 선 도 위 원	법 무 처	5,197
	개 생 보 호 위 원	//	10,845
	보 호 위 원	//	4,441
	종 교 지 도 위 원	//	226
	방 훈 지 도 위 원	//	374
	경 찰 선 도 위 원	내 무 부	8,963
	학 교 상 담 봉 사 자	교 육 부	3,000
	아 동 복 지 시 설 봉 사 자	보 건 사 회 부	3,554
	아 동 위 원	//	5,418

3. 청소년단체 현황

가. 청소년단체별 청소년 및 지도자 현황

(단위 : 명)

단 체 명	총인원	청 소 년		지 도 자			기타 일반, 특별가 족회원등
		정회원	준회원	상근	비상근	자 원 봉사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31 개 회원단체)	4,731,195						
국제경상학생협회	620	600			20		
국제연합한국학생협회	7,216	5,647	1,517	2	50		
국제학생기술연수협회	527	300	200	1	10	16	
대한가족계 획 협 회	47,229	200		271		236	46,522
대한불교청년회	1,501,395	320,000	1,180,000	45	1,350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110,570	103,216	3,600	35	2,327	1,267	125
대한 Y M C A 연맹	57,800						
대한 Y W C A 연합회	40,546	7,757		309	405	2,724	29,351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20,950	20,000		800		150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20,584	2,425		109	17,950	100	
세계대학봉사회	1,015						
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	245,013			10		250	
아시아자유청년연맹	9,026	3,490	5,177	25	56	278	

단 체 명	총인원	청 소 년		지 도 자			기 타 일반, 특별, 가족회원등
		정회원	준회원	상근	비상근	자 원 봉사자	
원불교청년회	89,448	41,565	46,093	515	175	750	350
울곡향약회	4,460						
청소년적십자	112,681	110,662		36	1,983		
한국결스카우트연맹	158,377	143,366		60		14,95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801,000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51,100						
한국라보	5,641	5,400		17	224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266,403	236,002		111	13,532	16,758	
한국불교청년회	59,027	21,470	32,750	218	210	2,112	2,267
한국 B B S 중앙연맹	107,537	48,548		211	2,834	55,944	
한국 4 - H 후원회	512,671	341,000			171,671		
한국소년지도자협회	104,290	102,700		14	1,513	63	
한국우주소녀단	5,608	2,800		6	2		2,800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	8,403	6,400	2,000	3			
한국유스호스텔연맹	69,566	65,367		4	1,116	35	3,044
한국청소년연맹	273,045	233,942		124	57	15,868	23,05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36,131	32,034		60	3,429		608
홍 사 단	3,056	1,860	531	15	57	330	

나. 청소년단체별 국제교류 실적(1989년)

단 체 명	계		파 견		방 한	
	회 수	인 원	회 수	인 원	회 수	인 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31	642	19	188	12	454
국제경상학생협회	13	76	8	38	5	38
국제학생기술연수협회	3	9	2	4	1	5
대한가족계획협회	2	2	2	2	-	-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2	20	1	10	1	10
대한YMCA연맹	35	449	19	252	16	197
대한YWCA연합회	13	23	11	16	2	7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5	35	4	5	1	30
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	6	43	3	39	3	4
아시아자유청년연맹	8	18	5	11	3	7
원불교청년회	3	4	3	4	-	-
청소년적십자	7	95	6	56	1	39
한국걸스카우트연맹	16	172	9	69	7	103
한국라보	9	469	3	169	6	300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38	701	19	430	19	271
한국BBS중앙연맹	7	13	5	9	2	4
한국4H후원회	4	44	2	33	2	11
한국우주소녀단	2	23	1	16	1	7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	5	79	4	14	1	65
한국유스호스텔연맹	19	301	8	64	11	237
한국청소년연맹	39	2,993	19	999	20	1,99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8	577	15	496	3	81
홍 사 단	1	10	-	-	1	10
계	286	6,798	168	2,924	118	3,874

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단 체 명	설립 년도	회원수 (명)	설 립 목 적	주관관청 (등록부처)
한국청소년단체 협의회	1965	31 개 단체 (4,731,195)	국내 청소년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지원 육성	
국제 경 상 학생 협회	1962	620	국제 경영 기술 개발 및 국제 교류	임 의
국제 연합 한국 학 생 협회	1952	7,216	국제 학생 간의 상호 이해 및 우의 증진	외 무 부
국제 학생 기술 연 수 협회	1969	527	이 공 계 학생의 국제적 기술 교환	임 의
대 한 가족 계 획 협회	1961	47,229	가족 계획과 모자 보건으로 가족 복지 증진	보 사 부
대 한 불 교 청 년 회	1920	1,501,395	불타 사상을 바탕으로 자기 연마	임 의
대 한 불 교 청 소 년 교 화 연 합 회	1966	110,570	청소년 불교 신앙 생활 지도	
대 한 Y M C A 연 맹	1903	57,800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정의와 사랑 실천	문 화 부
대 한 Y W C A 연 합 회	1922	40,546	젊은 여성의 기독교 신앙 생활화	보 사 부
대 한 청 소 년 성 경 구 락 부	1929	20,950	복음 전파와 올바른 시민 교육에 기여	문 화 부
서울 청소년 지도 육 성 회	1970	20,584	청소년 지도 육성 및 비행 예방 활동 전개	내 무 부
세계 대학 봉 사회	1955	1,015	대학 발전과 대학생 복지 증진에 기여	서울시 교 위
세계 도덕 재 무 장 한국 본 부	1948	245,013	절대 정직, 절대 순결, 절대 무시, 절대 사랑의 실천	

단 체 명	설립 년도	회원수 (명)	설 립 목 적	주무관청 (등록부처)
아시아자유청년 연맹	1962	9,026	인류평화와 복지, 자유 증진에 기여	공 보 처
원불교청년회	1964	89,448	일원의 진리를 바탕으로 사회발전 에 기여	문 화 부
울곡향약회	1968	4,460	울곡선생의 향약정신 실천	문 화 부
청소년적십자	1953	112,681	타인의 복지와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	보 사 부
한국결스카우트 연맹	1946	158,377	국가관 정립과 공민자질 향상 도모	문 화 부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1946	810,000	그리스도의 복음전파	임 의
한국기독교학생회 총연맹	1969	51,100	크리스찬 대학생의 이념 구현	임 의
한국라보	1973	5,641	각국간 친선교문화교류 추진	
한국보이스카우 트연맹	1922	266,403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 도모	
한국불교청년회	1911	59,027	불제자로서의 정법연구 실천	문 화 부
한국 B B S 중양 연맹	1964	107,537	비행, 불우청소년 보호 및 선도	내 무 부
한국 4 - H 후원 회	1954	512,671	4 - H 활동을 통한 농촌 청소년 지도 육성	농촌진흥청
한국소년지도자 협회	1949	104,290	청소년 사회교육에 기여	서울시교 위
한국우주소녀단	1989	5,608	21 세기 우주과학 인력의 양성	과학기술 처

단 체 명	설립 년도	회원수 (명)	설 립 목 적	주무관청 (등록부처)
한국유네스코 학생협회	1954	8,403	봉사활동을 통한 세계평화에 기여	해운항만청
한국유스호스텔 연맹	1967	69,566	여행활동을 통한 청소년 육성	
한국청소년연맹	1981	273,045	민족의 통일, 번영과 국제 사회에 이바지할 미래세대 육성	
한국해양소년단 연맹	1962	36,131	해양사상 고취로 진취적 기상 증진	
홍 사 단	1913	3,056	무실, 역행, 충의, 용감 정신 함양	

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국제교류 현황 (1989 년)

— 총 괄

구 분	회 수	대 상 및 인 원
파 견	19 회	청소년 및 지도자 188 명
방 한	12 회	// 454 명
계	31 회	// 642 명

— 단체파견

구	분	기	간	파	견	국	참가인원
한	•마청	소년지도자교류대표단	'89. 5.19-6.1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12 명
자원봉사	365 일	아시아교류	'89. 5.25- '90.3.8	일본			2 명
청소년업무담당공무원	해외연수		'89. 6.12-23	싱가폴, 대만, 말레이시아			17 명
청소년대표단	일본	파견	'89.7.11-8.10	일	본		5 명
일본총무청	초청	청소년 및 지도자	파견	'89. 7.19-8.4	"		30 명
한	•일	청소년 및 지도자 정기교류	'89. 7.19-30	"			19 명
"국제	청년의 마을"	청소년	파견	'89. 7.22-29	"		10 명
일본문화교류	기금센타	초청	파견	'89. 8.15-26	"		20 명
선진국	청소년활동	조사단	파견	'89.11. 5-20	독일, 스페인, 헝가리		20 명
청소년지도자	일본	농촌활동 연구조사단	파견	'89.12. 4-13	일	본	10 명
청소년지도자	미수교국	(중국)파견	'89.12. 4-10	중	국		3 명
문예행사참가	직업	청소년 동남아연수	'89.12.15-23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17 명

— 국제회의 및 세미나 참가

구 분	기 간	파 견 국	참가인원
제 11 회 한 • 일 청소년지도자 회의 및 청소년 문제연구 세미나	'89. 4.25-28	일 본	11 명
제 2 차 A Y C 집행이사회	'89. 6.18-21	네팔 (카트만두)	2 명
우애국제청년회의	'89. 9.13-18	일 본	1명
국제 홈스테이회의	'89. 9.16-19	일본 (호카이도)	3명
청소년 국제학술회의	'89.10. 2-27	말레이시아	3명
청소년 국제학술회의	'89.11. 5- 8	태 국	1 명
국제 청소년회의	'89.12. 4-9	홍 콩	2명

— 방 한

방 한 자	기 간	인 원	목 적
네팔 청소년단체 협의회회장	'89. 5.26	Chaudra Banhadur Gurung 회장의 1명	한국 청소년단체 및 시설 견학
싱가포르 청소년 단체	'89. 6.14 -19	Vincent Lan 단장의 19명	한·싱가폴 청소년 교류
싱가포르이민협의 회산하서부청소년 대표단	'89. 6.21 -24	Tan Lee Joo 단장의 12명	//
일본청소년 및 지 도자 대표단	'89. 8. 2 -13	Masato Shimizu 단장의 16명	한·일 청소년 및 지도자 교류
일본 다지미시 청소년대표단	'89. 9.18	Matsu Ura 단장의 12명	한국 청소년활동 및 시설 견학
말레이시아 청소 년지도자대표자	'89. 9.21 -30	Hi.Mohd.Nordin B.Abdullah 단장의 14명	한·말 청소년 지도자 교류
일본청소년 지도자 방문	'89.10.14	Chiyoko Aono 여사 1명	한국 청소년단체 및 시설 견학
일본 니카타현 청소년대표단	'89.10.18 -25	Watanabe 단장의 19명	//
헝가리 청소년단 체협의회회장	'89.10.25 -30	Istvan Stumpt 회장 1명	한·헝가리 교류 협의
일본 아바라끼현 청소년대표단	'89.11.23	Akutsu Takeo 단장의 330명	한국 청소년 활동 및 시설 견학
일본 기후현 청소 년대표단	'89.11.25	Kodama 단장의 19명	//
방글라데시 청소 년단체협의회 회장	'89.12.12	Mohd.Fazlul Hague 회장 1명	한국 청소년단체 및 시설 견학

4. 청소년 전용시설 현황

가. 시·도별 시설 보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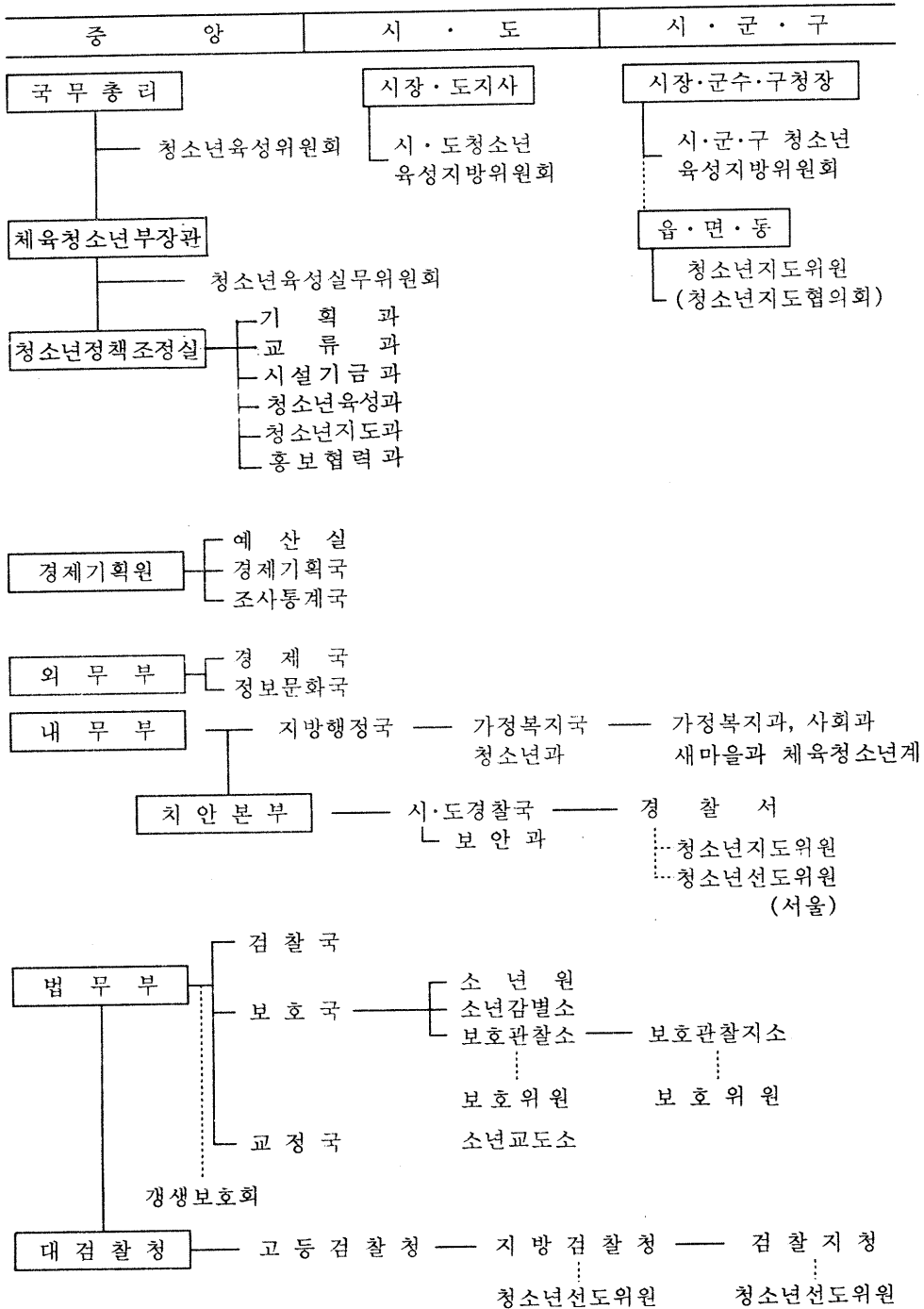
시설별 시·도별	총 계	야영장	심 신 수련장	자 연 학습원	청소년 회 관	학 생 교육원	학 생 과학관	유 스 호스텔	오 락 시 설
합 계	218	72	56	9	33	15	12	16	5
서울	27	3	4		11	4		1	4
부산	10	3	2		2		1	2	
대구	8	2	1		3	1	1		
인천	3	1		1	1				
광주	3				2		1		
대전	2		1		1				
경기	42	12	18		4	1	2	5	
강원	22	7	7	1	1	2	1	3	
충북	26	13	7	1	1	1	1	2	
충남	17	9	4	1		1	1	1	
전북	16	8	2	1	2		1	1	1
전남	9	5	2	2			1		
경북	8	4		1	1	1	1		
경남	13	4	5	1	1	1	1		
제주	12	1	3	1	3	2	1	1	

나. 설치 주체별 보유현황

설치자별 구 분	계	공공기관	종교단체	민간단체	개 인	비 고
합 계	218	138	7	44	29	
야영장	72	59	2	8	3	
심신수련장	56	16	4	1	14	
자연학습원	9	8		4		
청소년회관	33	27	1		1	
학생교육원	15	14		1		
학생과학관	12	12			11	
유스호스텔	16			5		
오락시설	5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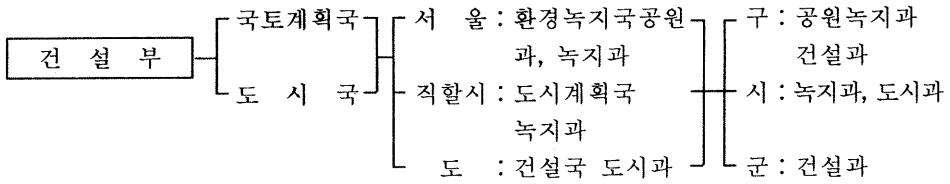
5. 정부 부처별 청소년육성 관련 업무현황 (총괄)

가. 청소년육성 관계기관 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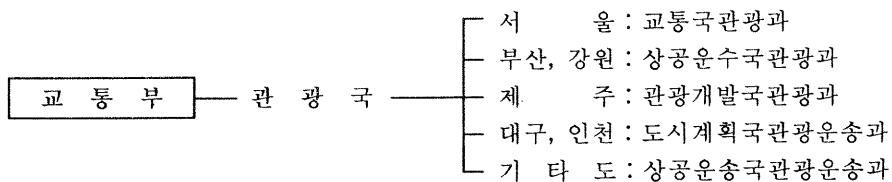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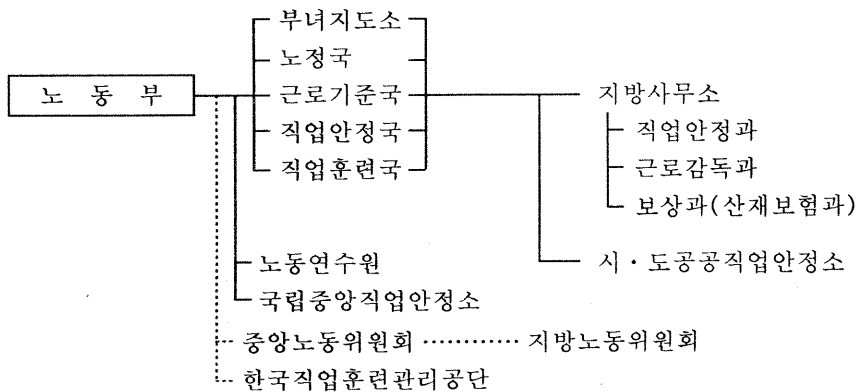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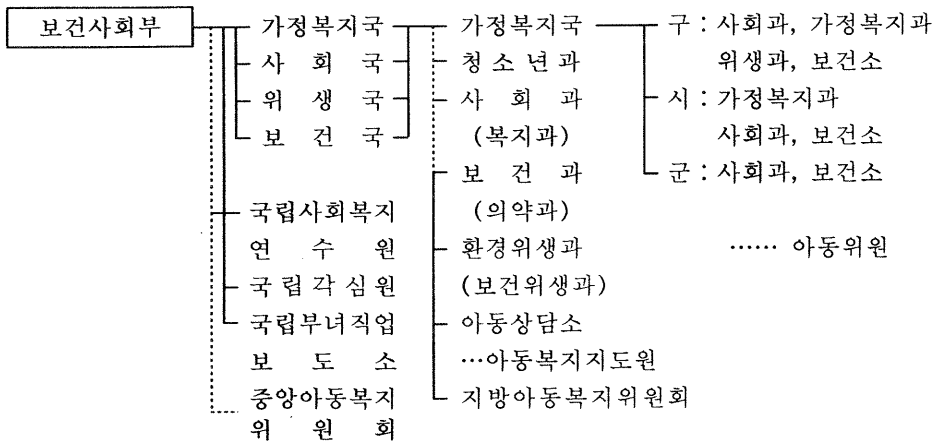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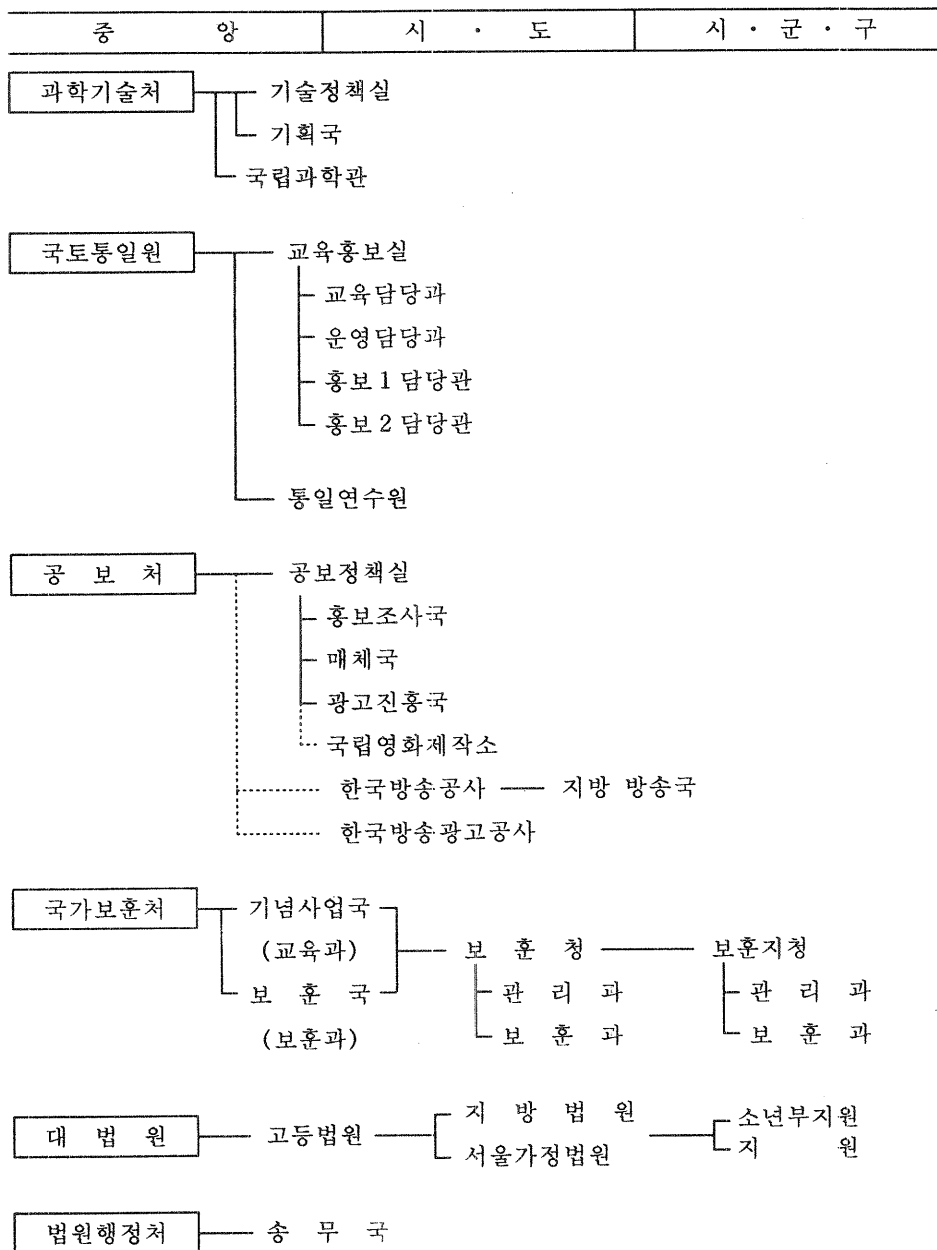
중	앙	시	도	시	군	구		
교 육 부	- 장 학 편 수 실 - 대 학 정 책 실 - 보 통 교 육 국 - 교 직 국 - 사 회 국 제 교 육 국 - 교 육 시 설 국	- 시 · 도 교육위원회 - 학 무 국 - 관 리 국	- 시 · 군 교육청 - 교육구청 - 학 무 과 - 관 리 과	국립중앙도서관 (사회교육과)				
				문 화 부	생활문화국	생활문화과		
					종 무 실			
					문화정책국			
					예술진흥국			
	어문출판국							
	문화재관리국	5대궁 및 11개능원						
	국립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중앙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재보호협회							
	영화진흥공사							
	독립기념관							
	예술의 전당							
체육청소년부	체육진흥국 (생활체육과)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							
농촌진흥청	지 도 국 (청소년과)	농촌진흥원 시 · 도	농촌지도소 시 · 군					
		4-H회연합회			4-H회연합회			
수 산 청	어 정 국 (협동조합과)	국립수산진흥원 국립수산기술연구소	지 원 — 어촌지도소					

중 양	시 · 도	시 · 군 · 구
-----	-------	-----------



※ 제주: 관광개발국도시과





나. 부처별 주요 청소년육성 업무분장 현황

관련부서	담 당 기 능
체육청소년부	○ 청소년육성 종합계획 수립 ○ 각 부처별 업무 총괄, 조정 ○ 청소년육성기관 위원회 운영 ○ 각종 청소년시설 확충 ○ 청소년 국제교류 ○ 학교 및 국민체육진흥 ○ 청소년 단체를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
내 무 부	○ 청소년 범죄예방 및 비행청소년 선도·보호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 지역사회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 ○ 청소년의 복지를 해하는 범죄의 단속·처리 ○ 자연보호운동과 청소년시설(자연학습원 등) 확충
법 무 부	○ 비행청소년 교정·교화 ○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
국 방 부	○ 장병 1인1기 기술습득을 위한 계획의 수립 ○ 장병의 국가기술자격취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교 육 부	○ 학생 생활지도 및 학생수련 ○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민정신교육 및 안보교육 ○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기관 지도·감독

관련부서	담 당 기 능
농림수산부	○ 농·어민 후계자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건 설 부	○ 국민휴양시설의 조성 및 정비·확충 ○ 자연공원의 지정 및 유지·관리
보건사회부	○ 가정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아동 부녀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 사회복지법인과 단체의 육성·지도 ○ 환경위생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노 동 부	○ 근로청소년 보호육성 ○ 근로청소년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도 ○ 무직·미진학 청소년직업훈련기관의 운영 ○ 근로청소년의 교양지도 및 노동문제 세미나 개최
교 통 부	○ 건전국민관광 지도 ○ 관광자원의 조사 및 개발 ○ 전적지 특수단지의 개발
문 화 부	○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지원 ○ 민족문화의 전승·개발 및 보급 ○ 종교생활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
공 보 처	○ 매스컴을 통한 청소년교육
국토통일원	○ 국민정신교육에 관한 계획조정 ○ 통일에 관한 국내외 기관 및 단체의 지도

관련부서	담 당 기 능
국가보훈처	○ 보훈대상자녀 지원 ○ 무의탁 보훈대상자녀의 수용보호
농촌진흥청	○ 4-H회조직 육성·지도 ○ 농민후계자 육성·지원 ○ 농촌청소년의 해외연수
수 산 청	○ 어민후계자 정착지도

다. 정부 부처별 청소년 관련사업 및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관련부처	자체 사업비	자치 단체에 대한보조	민간단체에 대한보조	합 계
교 육 부	청소년및 지도자 국제교류 44,817 사회교육관리 12,830		한국청소년연맹 476,045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 515,384 한국청소년단체협 의회 105,3 한국걸스카우트연맹 13,83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7,087	1,463,023

관련부처	자체 사업비	자치 단체에 대 한보조	민간단체에 대한보조	합 계
체 육 청 소년부			청 소년 및 지도자 국제 교류 64,910	804,317
			말레이시아 한국어 교육 19,008	
			유네스코아시아교 육 혁신사업 지원 15,800	
			유네스코청년원 기숙사 증축 157,982	
	학교체육육성 103,083	체육증 • 고등학교 299,161	대학간 체육행사 및 정책종목육성 136,000	
	사회체육육성 146,766	지정 학교 급식 학교 6,000	사회체육진흥세미나 5,500	
	체육시설 관리 31,814		사회체육지도자양성 12,911	
	학교급식 관리 26,251		한국레크레이션협회 11,600	
			대한산악연맹 7,171	
			학교급식 관리 18,000	

관련부처	자체 사업비	자치단체에대한보조	민간단체에대한보조	합 계
노동부	노동청소년 건립및 운영 475 임대아파트건립 2,984 노동문화제 18,666 근로여성 특별보호 74,144	근로청소년회 관건립 및 운영 1,774,858	임대아파트건립 6,525,103 노동문화제 190,885 시범탁아소건립 285,012 근로여성 특별보호 95,652	8,967,779
농 립 수산부		농어민후계자대회 185,700		185,700
농 촌 진흥청	청소년지도사업 105,635	청소년과제교육 73,750	농촌청소년회관건립 500,000	679,385
보 건 사회부	부랑인보호 682 장애자복지 198,896 아동의 건전육성 12,581 부녀직업전도 43,883 가정복지 26,880	부랑인보호시설 5,991,864 심신장애자 복지 시설및 서비스 9,958,528 심신 장애자 시설기 능 보강 4,616,748 새마을유아원 1,627,597	한국장애자재활협회 146,528 서울장애자올림픽 조직위원회 5,470,163 한국어린이재단 52,117	42,338,670

관련부처	자체사업비	자치단체 예대한보조	민간단체 예대한보조	합 계
		아동시설보호 11,220,531 아동의 건전육성 1,189,923 모자보호 936,486 부녀직업보도소 845,263		
국 가 보훈처	자녀교육보호 2,386,714		자녀교육보호 8,472,687	10,859,401
문 화 공보부			공연윤리위원회 44,000 청소년대상문화행사 6,000	50,000
교통부	관광지개발 50,000	관광지개발 9,150,000		9,300,000
국 토 통일원	통일의지함양 41,903		대학통일연구문제 지원 156,000	197,903
법무부	보도행정 22,813 원생교육훈련 308,674		갱생보호사업 1,542,764	5,973,676

관련부처	자체 사업 부	자치 단체 에대한보조	민 간 단체 에대한보조	합 계
	소년원 운영 1,672,616 원생 수용 2,121,956 보호행정 304,853			
내 무 부		새마을 유아원 168,000	한국 B B S 연맹 120,000	288,000
항 만 청			한국해양소년단 연맹 144,448	144,448
합 계	7,859,916	48,044,409	25,347,977	81,252,302

비고 : 청소년관련부처 중에서 국방부의 예산은 대외비로 알 수 없고, 건설부에는 청소년사업에 관한 별도의 재정이 없음.

자료 : 각부처, 「 198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 1988

6. 청소년 관계법령 현황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가사심판법	1963.7.31 법률 제1375호	청소년의 선도·
○ 가사심판규칙	1964.3.14 대법원규칙 제230호	보호 "
○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1978.7.4 법무부령 제206호	청소년 연령· 호칭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1973.3.30 대통령령 제6615호	기본법령
○ 각종학교등의체육기준에관 한규칙	1976.12.6 문교부령 제399호	청소년시설·공 간의 설치·관리
○ 각종학교에관한규칙	1977.9.13 문교부령 제413호	청소년의 학업 진학
○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1982.4.6 대통령령 제10786호	"
○ 갱생보호법	1986.12.23 법률 제3858호 전문개정	청소년의 교정· 교화
○ 갱생보호법시행령	1987.2.13 대통령령 제12074호 전문개정	"
○ 갱생보호사업운영규칙	1977.6.7 법무부령 제201호	"
○ 건축법	1962.1.20 법률 제984호	청소년의 시설· 공간의 설치·관 리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건축법시행령	1982.8.7 대통령령 제1082호 전문개정	청소년 시설·공간 의 설치·관리
○ 건축사법	1963.12.16 법률 제1536호	청소년 연령·호칭
○ 결핵예방법	1967.1.16 법률 제1881호	청소년의 건강· 보건
○ 경범죄처벌법	1983.12.30 법률 제3680호 전문개정	청소년의 선도· 보호
○ 경범죄처벌법시행령	1981.3.16 대통령령 제10255호	"
○ 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	1981.4.13 내무부령 제346호	"
○ 경찰대학설치법	1979.12.28 법률 제3172호	청소년의 연령· 호칭
○ 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 에관한규정	1980.4.10 대통령 제9847호	"
○ 경찰관직무집행법	1981.4.13 법률 제3427호 전문개정	청소년의 선도· 보호
○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1981.6.11 대통령령 제10346호 전문개정	"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규칙	1969.7.16 문교부령 제227호 한글화	청소년의 학업· 진학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규칙	1969.7.16 문교부령 제227호 한글화	청소년의 학업· 진학
○ 공동주택관리규칙	1982.2.22 건설부령 제318호 전문개정	청소년 시설·공 간의 설치·관리
○ 공연법	1961.12.30 법률 제902호	청소년 시설·공 간의 이용·관람
○ 공연법시행령	1982.3.11 대통령령 제10755호	"
○ 공연법시행규칙	1982.5.22 문화공보부령 제74호 전문개정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 한법률	1975.12.31 법률 제2814호	청소년 유관기관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 한법률시행령	1976.4.1 대통령령 제8059호	청소년 유관기관
○ 공중위생법	1986.5.10 법률 제3822호	청소년 관련위 생·풍속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1987.3.18 보건사회부령 제797호	"
○ 관광진흥법	1986.12.31 법률 제3910호 전문개정	청소년 시설·공 간의 설치·관리
○ 관광진흥법시행령	1987.7.1 대통령령 제2212호 전문개정	"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1987.7.7 교통부령 제857호 전문개정	청소년관련매체 환경
○ 광고물등관리법	1962.1.20 법률 제988호	
○ 교원연수에관한규정	1972.9.25 대통령령 제 6352호	청소년지도자
○ 교원연수에관한규정시행 규칙	1972.12.29 문교부령 제307호	"
○ 교육공무원법	1981.11.23 법률 제3458호 전문개정	"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1969.12.4 대통령령 제4359호	"
○ 교육법	1949.12.31 법률 제86호	청소년의 학업· 진학
○ 교육법시행령	1970.2.19 대통령령 제4589호 한글화	"
○ 국가기술자격법	1973.12.31 법률 제2672호	청소년의 근로· 복무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1982.4.29 대통령령 제10802호 전문개정	"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1982.5.8 노동부령 제11호 전문개정	"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84.8.2 법률 제3742호	청소년의 복리·후생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84.12.31 대통령령 제11613호	"
○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1975.12.31 법률 제2828호	연령·호칭
○ 국내여비규정	1970.11.3 대통령령 제5380호 한글화	"
○ 국립과학관전시품관람규정	1971.6.11 총리령 제99호	청소년 시설공간의 이용·관람
○ 국립국악원대관규칙	1988.6.8 문화공부부령 제97호	"
○ 국립박물관진열품관리규칙	1974.4.1 문화공보부령 제39호 전문개정	"
○ 국립중앙도서관도서열람규칙	1975.2.27 문교부령 제355호 전문개정	"
○ 국립중앙박물관유물복제규칙	1975.1.4 문화공보부령 제42호	"
○ 국립학교설치령	1977.8.30 대통령령 제8672호 전문개정	청소년의 학업진학
○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	1975.5.1 문화공보부령 제46호	청소년 시설공간의 이용·관람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국민연금법	1986.12.31 법률 제3902호 전문개정	연령·호칭
○ 국민연금법시행령	1987.8.14 대통령령 제12227호 전문개정	"
○ 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취급 규칙	1978.10.30 건설부령 제213호	청소년 유관기관
○ 국민체육진흥법	1982.12.31 법률 제3612호 전문개정	청소년 시설·공 간의 설치·관리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1983.8.25 대통령령 제11212호 전문개정	"
○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1984.2.16 체육부령 제5호	" 청소년 유관기관
○ 국민투표법	1989.3.25 법률 제4886호 전문개정	연령·호칭
○ 국외여비규정	1970.8.3 대통령령 제5260호	"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1963.10.14 법률 제1415호	청소년 시설·공 간의 조성
○ 국토이용관리법	1972.12.30 법률 제2408호	"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983.5.30 대통령령 제1137호 전문개정	"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1982.3.27 국회규정 제144호 전문개정	연령·호칭
○ 국회방청규칙	1964.5.11 국회규칙 제6호	"
○ 국회사무처 사무분장규정	1985.2.27 국회규정 제182호 전문개정	"
○ 국회의원 선거법	1988.3.17 법률 제4003호 전문개정	"
○ 군기술위탁생규정	1970.6.16 대통령령 제5052호	"
○ 군인연금법	1963.1.28 법률 제1260호	"
○ 군인연금법시행령	1970.6.16 대통령령 제5058호	"
○ 군인자녀교육보호법	1972.12.30 법률 제2429호	청소년의 복리· 후생
○ 군인자녀교육보호법시행령	1973.3.10 대통령령 제6538호	"
○ 군행형법시행령	1970.6.16 대통령령 제5057호	연령·호칭
○ 근로기준법	1953.10 법률 제286호	청소년의 근로· 복무
○ 근로기준법시행령	1969.11.10 대통령령 제4220호	"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기능자양성령	1969.11.15 대통령령 제4228호	청소년의 근로· 복무
○ 기능장려법	1989.4.1 법률 제4123호	”
○ 기능장려법시행령	1989.10.13 대통령령 제12817호	”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1951.11.7 법률 제224호	청소년 유관기관
○ 기부금품모집금지법시행령	1970.6.19 대통령령 제5085호	”
○ 기생충질환예방법	1966.4.25 법률 제1789호	청소년의 건강· 보건
○ 기생충질환예방법시행규칙	1969.6.4 보건사회부령 제265호 한글화	”
○ 남녀고용평등법	1987.12.4 법률 제3989호	청소년의 근로· 복무
○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1988.7.7 대통령령 제12489호	”
○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1988.9.9 제48호	”
○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 시행령	1981.2.28 대통령령 제10209호	청소년의 복리· 후생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990.4.7 법률 제4228호	”
○ 농업협동조합법	1961.7.29 법률 제670호	연령·호칭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1975.12.31 법률 제2887호 전문개정	청소년 시설공 간의 조성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 률시행령	1976.4.21 대통령령 제8094호전문개정	"
○ 단기사관학교설치법	1974.12.21 법률 제2703호	연령·호칭
○ 담배사업법	1988.12.31 법률 제4065호	청소년의 건강· 보건
○ 담배사업법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87호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1989.1.24 재무부령 제1769호	"
○ 대마관리법	1976.4.7 법률 제2895호	"
○ 대마관리법시행령	1976.6.14 대통령령 제8159호	"
○ 대마관리법시행규칙	1976.10.26 보건사회부령 제536호	"
○ 대학설치기준령	1982.11.31 대통령령 제10983호 전문개정	청소년의 학업· 진학
○ 대한민국헌법	1987.11.7 법률 제3937호	기본법령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1987.12.4 법률 제3988호 전문개정	청소년단체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1988.3.29 대통령령 제12424호 전문개정	청소년단체
○ 도로교통법	1984.8.4 법률 제3744호 전문개정	청소년의 선도· 보호
○ 도서관법	1987.11.28 법률 제3972호 전문개정	청소년 시설·공 간의 이용·관람
○ 도서관법시행령	1988.2.16 대통령령 제12506호	"
○ 도·소매업지흥법시행령	1987.7.1 대통령령 제12211호	연령·호칭
○ 도시계획법	1971.1.19 법률 제2291호	청소년 시설·공 간의 조성
○ 도시계획법시행령	1971.7.22 대통령령 제5721호 전문개정	"
○ 도시계획시행규칙	1976.4.3 건설부령 제169호 전문개정	"
○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979.5.21 건설부령 제225호	"
○ 도시공원법	1980.1.4 법률 제3256호	청소년 시설·공 간의 설치·관리
○ 도시공원법시행령	1980.10.6 대통령령 제10038호	"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도시공원법시행규칙	1980·10·15 건설부령 제275호	청소년 시설·공간 의 설치·관리
○ 독립기념관법	1986·5·9 법률 제3820호	청소년 시설공 간의 이용관람
○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1963·12·13 법률 제1492호	청소년의 건강· 보건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 법률	1990·4·7 법률 제4227호	청소년의 학업· 진학
○ 마약법	1957·4·23 법률 제440호	청소년의 건강· 보건
○ 마약법시행령	1969·11·10 대통령령 제4237호	"
○ 모자보건법	1986·5·10 법률 제3824호 전문개정	청소년의 복리 후생
○ 모자보건법시행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46호 전문개정	"
○ 모자보건법시행규칙	1987·4·17 보건사회부령 제800호 전문개정	"
○ 모자복지법	1989·4·1 법률 제4121호	"
○ 문화예술진흥법	1972·8·14 법률 제2337호	청소년시설공간 의 이용·관람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1972·9·29 대통령령 제6357호	청소년시설공간의 이용·관람
○ 문화재보호법	1982·12·31 법률 제3644호 전문개정	〃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1983·8·3 대통령령 제11184호 전문개정	〃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1983·9·19 문화공보부령 제77호 전문개정	〃
○ 미성년자보호법	1961·12·13 법률 제834호	청소년의 선도·보호
○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1970·6·19 대통령령 제5098호	〃
○ 민방위기본법	1975·7·25 법률 제2776호	연령·호칭
○ 민법	1958·2·22 법률 제471호	기본법령
○ 민사소송법	1960·4·4 법률 제547호	〃
○ 박물관법	1984·12·31 법률 제3775호	청소년 시설·공간의 이용·관람
○ 박물관법시행령	1985·7·6 대통령령 제11723호	〃
○ 박물관법시행규칙	1985·7·16 문화공보부령 제88호	〃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방송법	1987.11.28 법률 제3978호	청소년관련매체 환경
○ 방송법시행령	1988.4.19 대통령령 제12432호	"
○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 기준령	1974.1.4 대통령령 제7008호	청소년의 학업· 진학
○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 령시행규칙	1974.2.25 문교부령 제335호	"
○ 방송통신고등학교수료자의 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평가 시험규칙	1976.9.25 문교부령 제394호	"
○ 방화규정	1970.6.19 대통령령 제5091호	청소년 시설·공 간의 설치·관리
○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	1968.5.29 대법원규칙 제409호	연령·호칭
○ 법원공무원여비규칙	1965.5.21 대법원규칙 제255호	"
○ 법원공무원국회여비규칙	1965.5.21 대법원규칙 제256호	"
○ 법원공무원규칙	1973.9.14 대법원규칙 제537호 전문개정	"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법인세법	1967.11.29 법률 제1964호	관련세법
○ 법인세법시행령	1970.8.20 대통령령 제5268호 한글화	"
○ 병역법	1983.12.31 법률 ○제3696호 전문개정	청소년의 근로·복무
○ 병역법시행령	1984.9.22 대통령령 제1151호 전문개정	"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69.11.27 대통령령 제4326호	청소년의 건강·보건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1970.5.9 보건사회부령 제349호	청소년의 건강·보건
○ 보건소법	1962.9.24 법률 제1160호	"
○ 보건소법시행령	1976.4.15 대통령령 제8087호	"
○ 보안관찰법시행령	1989.9.11 대통령령 제12807호 전문개정	연령·호칭
○ 보안관찰법시행규칙	1989.9.11 법무부령 제328호 전문개정	"
○ 보험업법시행령	1978.2.27 대통령령 제8865호 전문개정	"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보호관찰법	1988.12.31 법률 제4059호	청소년의 교정·교화
○ 보호관찰법시행령	1989.6.23 대통령령 제12736호	"
○ 보호관찰법시행규칙	1989.7.1 법무부령 제326호	"
○ 보호소년처우심사위원회 규칙	1982.2.11 법무부령 제238호	"
○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 직무에관한법률	1961.8.31 법률 제703호	청소년의 복리후생
○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 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1969.11.10 대통령령 제4235호	"
○ 부가가치세법	1976.12.22 법률 제2934호	관련세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76.12.31 대통령령 제8490호	"
○ 자격및사격장단속법	1980.1.4 법률 제3226호 전문개정	연령·호칭
○ 자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	1980.4.26 대통령령 제9856호 전문개정	"
○ 사관학교설치법	1955.10.1 법률 제374호	"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1973.12.20 법률 제2650호	"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1974.1.4 대통령령 제7005호	"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1975.10.28 법무부령 제196호 전문개정	청소년의 선도· 보호
○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1985.5.8 문교부령 제539호	청소년의 학업· 진학
○ 사회교육법	1982.12.31 법률 제3648호	"
○ 사회교육법시행령	1983.9.10 대통령령 제1230호	"
○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1963.12.12 법률 제1485호	청소년단체
○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시 행령	1970.6.30 대통령령 제5141호	"
○ 사회보호법	1980.12.18 법률 제3286호	청소년의 교정· 교화
○ 사회보호법시행령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5호	"
○ 사회복지사업기금법	1980.12.31 법률 제3336호	청소년의 복리· 후생
○ 사회복지사업법	1970.1.1 법률 제2191호	"
○ 사회복지사업시행령	1984.2.28 대통령령 제11365호 전문개정	"
○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 규정	1971.9.6 보건사회부령 제379호	청소년지도자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삭도·궤도사업법	1977·12·31 법률 제3087호 전문개정	연령·호칭
○ 삭도·궤도사업법시행규칙	1978·8·26 대통령령 제9145호 전문개정	"
○ 산림법	1980·1·4 법률 제3232호 전문개정	청소년시설공간의 조성
○ 산림법시행령	1980·7·19 대통령령 제9968호 전문개정	"
○ 산림조합법	1980·1·4 법률 제3231호	연령·호칭
○ 산업안전보건법	1981·12·31 법률 제3532호	청소년의 근로·복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982·8·9 대통령령 제10889호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982·10·29 노동부령 제17호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71·11·19 대통령령 제5846호 전문개정	연령·호칭
○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 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 준령	1977·2·28 대통령령 제8462호	청소년의 학업·진학
○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 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 준령시행규칙	1977·3·16 문교부령 제406호	"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상공회의소법	1952·12·20 법률 제274호	연령·호칭
○ 상법	1962·1·20 법률 제1000호	기본법령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1980·12·13 법률 제3269호	청소년단체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령	1981·3·2 대통령령 제10226호	"
○ 생활보호법	1982·12·31 법률 제33623호 전문개정	청소년의 복리· 후생
○ 생활보호법시행령	1983·12·30 대통령령 제11293호 전문개정	"
○ 생활보호법시행규칙	1984·3·31 보건사회부령 제743호	"
○ 선박안전법시행령	1987·8·13 대통령령 제12225호 전문개정	연령·호칭
○ 선박직원법	1983·12·31 법률 제3715호 전문개정	"
○ 선원법	1984·8·7 법률 제3751호 전문개정	"
○ 선원법시행규칙	1985·12·20 교통부령령 제1069호	"
○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 한규정	1981·12·31 대통령령 제10692호	"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세무사법	1961.9.9 법률 제712호	연령·호칭
○ 소년법	1988.12.31 법률 제4057호 전문개정	청소년의 교정· 교화
○ 소년심판규칙	1989.7.4 대법원규칙 제1079호 전문개정	"
○ 소년원및소년감별소급여 규칙	1987.4.2 법률 제4058호 전문개정	"
○ 소년원법	1988.12.31 법률 제4058호 전문개정	"
○ 소년원법시행령	1989.12.22 대통령령 제12856호	"
○ 소득세법	1974.12.24 법률 제2705호 전문개정	관련세법
○ 소득세법시행령	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전문개정	"
○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 규정	1980.3.11 대통령령 제9808호	연령·호칭
○ 소방법	1975.12.31 법률 제2802호 전문개정	청소년 시설공 간의 설치관리
○ 소방법시행령	1981.11.6 대통령령 제10619호 전문개정	"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소방법시행규칙	1982.6.5 내무부령 제374호 전문개정	청소년 시설공 간의 설치관리
○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 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 에관한규칙	1982.9.15 내무부령 제380호	"
○ 수도권정비계획법	1982.12.31 법률 제1013호	청소년시설공간 의 조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1962.1.20 법률 제1013호	연령·호칭
○ 수형자등교육규칙	1982.11.15 법무부령 제247호 전문개정	청소년의 교정· 교화
○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1969.7.28 법률 제2118호	청소년단체
○ 시범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 한규정	1972.7.28 대통령령 제6305호	청소년의 학업· 진학
○ 식품위생법	1986.5.10 법률 제3823호 전문개정	청소년관련위생 환경·풍속
○ 식품위생법시행령	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 전문개정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87.3.28 보건사회부령 제798호 전문개정	"
○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	1982.2.17 대통령령 제10730호	청소년의 복리· 후생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아동복지법	1981.4.13 법률 제3438호 전문개정	청소년의 복리· 후생
○ 아동복지법시행령	1982.2.22 대통령령 제10741호 전문개정	"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1983.10.10 보건사회부령 제736호 전문개정	"
○ 아동복지위원회규정	1981.12.31 대통령령 제10689호 전문개정	"
○ 아동복지지도원등자격시험 규정	1970.4.24 보건사회부령 제348호	청소년지도자
○ 아동의권리에관한조약	1989.12.20 제44회 UN총회	기본법령
○ 안마사에관한규칙	1984.10.15 보건사회부령 제757호	청소년관련 위생 환경·풍속
○ 약사법	1963.12.13 법률 제1491 호	연령·호칭
○ 여객선운항관리규칙	1984.12.7 교통부령 제800호 전문개정	"
○ 여권법시행령	1974.12.31 대통령령 제7457호 전문개정	"
○ 여권법시행규칙	1988.12.31 외무부령 제139호 전문개정	"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염업조합법	1967.3.30 법률 제1936호	연령·호칭
○ 영농기술훈련규정	1974.9.28 대통령령 제7266호	청소년 근로·복 무
○ 영농기술훈련규정시행규칙	1974.12.27 농수산부령 제583호	"
○ 영사기사면허령	1970.8.28 대통령령 제5312호	연령·호칭
○ 영화법	1973.2.16 법률 제2536호	청소년 관련매 체·환경
○ 영화법시행령	1973.2.17 대통령령 제6507호	"
○ 영화법시행규칙	1985.7.5 문화공보부령 제87호 전문개정	"
○ 용역경비업법	1976.12.31 법률 제2946호	연령·호칭
○ 우량도서선정규정	1969.9.5 문화공보부령 제14호	청소년관련매체 ·환경
○ 원자력법	1982.4.1 법률 제3549호 전문개정	연령·호칭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 단규칙	1984.9.8 보건사회부령 제754호	청소년관련위생 환경·풍속
○ 위탁소년감별관정위원회 규칙	1982.2.11 법무부령 제239호	청소년의 교정· 교화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1963.4.27 법률 제1335호	청소년단체
○ 유선및도선업법	1980.1.4 법률 제3225호	연령·호칭
○ 유선방송관리법	1986.12.31 법률 제3914호	청소년관련매체 환경
○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1987.7.1 대통령령 제12196호	"
○ 유선방송관리법시행규칙	1990.4.21 총리령 제365호	"
○ 유아교육진흥법	1982.12.31 법률 제3635호	"
○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1983.6.9 대통령령 제11141호	"
○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 규정	1969.11.28 대통령령 제4342호	청소년의 선도· 보호
○ 윤락행위등방지법	1969.11.10 대통령령 제4233호	청소년관련위생 환경·풍속
○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1969.11.10 대통령령 제4233호	"
○ 윤락행위등방지법에의한직 업보도시설의시설기준령	1969.11.10 대통령령 제4234호	청소년의 선도· 보호
○ 음반에관한법률	1967.3.30법률 제1944호	청소년관련매체 환경
○ 음반에관한법률시행령	1971.3.16 대통령령 제5571호 전문개정	청소년관련매체 환경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의료법	1973.2.16 법률 제2533호 전문개정	청소년관련위생 환경·풍속
○ 의료보호법	1973.12.22 법률 제2533호 전문개정	청소년의 복리· 후생
○ 의료보호법시행령	1978.5.23 대통령령 제9029호	"
○ 인권에관한세계선언	1948.12.10	기본법령
○ 인사소송법	1961.12.6 법률 제803호	청소년의 선도· 보호
○ 임업시험장수목원관람규칙	1987.4.10 농림수산부령 제969호	청소년 시설·공 간의 이용·관람
○ 입양특례법	1976.12.31 법률 제2977호	청소년의 복리· 후생
○ 입양특례법시행령	1977.3.18 대통령령 제8509호	"
○ 입양특례법시행규칙	1977.4.8 보건사회부령 제558호	"
○ 자동차운수규칙	1982.7.20 교통부령 제740호	연령·호칭
○ 자동차운수사업법	1961.12.30 법률 제916호	"
○ 자연공원법	1980.1.4 법률 제3243호	청소년시설·공 간의 설치관리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자연공원법시행령	1980.8.18 대통령령 제9993호	"
○ 자연공원법시행규칙	1981.1.6 건설부령 제282호	"
○ 장애인복지법	1989.12.30 법률 제4179호 전문개정	청소년의 복리· 후생
○ 장학금규정	1969.11.25 대통령령 제4310호 한글화	청소년의 학업· 진학
○ 장학위원에관한규칙	1969.2.26 문교부령 제208호	연령·호칭
○ 재조사및원생급식관리위원회 회규정	1983.9.7 대통령령 제11226호 전문개정	청소년의 교정· 교화
○ 재소자의류및침구제식등 규칙	1985.4.15 법무부령 제272호 전문개정	연령·호칭
○ 재소자주·부식급여규칙	1988.6.24 법무부령 제311호 전문개정	"
○ 재외공관공증법	1963.12.7 법률 제1479호	전문개정
○ 재외공무원복무규정	1981.5.18 3 대통령령 제10312호	"
○ 재외교포학생단기교육규정	1978.6.21 대통령령 제9049호	청소년의 학업· 진학
○ 재외국민교육원설치령	1977.3.18 대통령령 제8511호	"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	1969.11.21 대통령령 제4291호	연령·호칭
○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	1977.2.28 대통령령 제8461호	청소년의 학업· 진학
○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 호법	1970.8.4 법률 제2216호	연령·호칭
○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 호법시행령	1971.1.18 대통령령 제5483호	"
○ 전당포영업법	1961.11.1 법률 제763호	"
○ 전문대학설치기준령	1978.7.4 대통령령 제9078호	청소년의 학업· 진학
○ 전시근로동원법	1953.6.3 법률 제292호	연령·호칭
○ 전염병예방법	1954.2.2 법률 제308호	청소년의 건강· 보건
○ 전염병예방법시행령	1969.11.17 대통령령 제4267호	"
○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1977.8.19 보건사회부령 제570호	"
○ 전통건조물보존법	1984.12.31 법률 제3777호	청소년 시설공 간의 이용·관람
○ 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령	1985.8.29 대통령령 제11753호	"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규칙	1985.12.5 문화공보부령 제89호	"
○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1987.11.28 법률 제3979호	청소년관련매체 환경
○ 정당법	1962.12.31 법률 제1246호	연령·호칭
○ 조세감면규제법	1981.12.31 법률 제3481호 전문개정	관련세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 전문개정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1982.3.25 재무부령 제1519호	"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1983.12.30 법률 제3673호 전문개정	연령·호칭
○ 주민등록법	1962.5.10 법률 제1067호	"
○ 주민등록법시행령	1970.4.10 대통령령 제4914호	"
○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1979.4.24 건설부령 제221호	청소년시설·공 간의 설치·관리
○ 주택건설촉진법	1977.12.31 법률 제3075호 전문개정	연령·호칭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78.3.14 대통령령 제888호 전문개정	청소년시설·공 간의 설치·관리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1978.10.18 건설부령 제202호	청소년의 복리· 후생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78.5.10 건설부령 제202호	청소년의 복리· 후생
○ 중기관리법	1975.7.26 법률 제2785호 전문개정	연령·호칭
○ 중소기업진흥법시행령	1983.8.11 대통령령 제11201호 전문개정	"
○ 중앙국립극장대관규칙	1982.9.11 문화공보부령 제75호 전문개정	청소년시설·공 간의 이용·관람
○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 규정	1985.2.21 대통령령 제11626호	청소년의 학업· 진학
○ 증권거래법	1976.12.22 법률 제2920호 전문개정	연령·호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	1989.4.1 법률 제4120호	"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1983.2.1 대통령령 제11034호 전문개정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 규정	1979.7.21 대통령령 제9541호	"
○ 지방세법	1961.12.8 법률 제827호	관련세법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지방세법시행령	1970.4.3 대통령령 제4840호	관련세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88.4.6 법률 제4005호	연령·호칭
○ 지방자치법	1988.4.6 법률 제4004호 전문개정	"
○ 지방자치법시행령	1988.5.7 대통령령 제12444호 전문개정	"
○ 지하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 규칙	1980.4.18 교통부령 제655호	청소년유관기관
○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67.3.30 법률 제1952호	청소년의 근로· 복무
○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1969.11.10 대통령령 제4217호	"
○ 직업훈련기본법시행규칙	1986.12.31 노동부령 제38호 전문개정	"
○ 직업훈련촉진기금법	1976.12.31 법률 제2974호	"
○ 직업훈련촉진기금법시행령	1977.3.28 대통령령 제8518호	"
○ 직업훈련촉진기금법시행 규칙	1980.11.24 보건사회부령 제659호	"
○ 철도법	1961.9.18 법률 제714호	연령·호칭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철도운송규정	1969·12·11 대통령령 제4451호	“
○ 철도전시관진열품관람규칙	1988·4·8 교통부령 제881호	청소년시설·공간 의 이용·관람
○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1989·10·31 체육부훈령 제41호	기본법령
○ 청소년육성법	1987·11·28 법률 제3973호	“
○ 청소년육성법시행령	1988·6·9 대통령령 제12460호	“
○ 청소년육성법시행규칙	1988·12·31 체육부령 제12호	“
○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1982·12·31 법률 제3610호	청소년의 학업· 진학
○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1983·7·1 법률 제738호	“
○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 법률	1982·12·31 법률 제3601호	연령·호칭
○ 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 립및감독에관한규칙	1983·10·28 체육부령 제3호	청소년유관기관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 한법률	1989·3·31 법률 제4106호	청소년시설·공 간의 설치·관리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89.7.1 대통령령 제12743호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89.7.12 체육부령 제13호	"
○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	1984.2.16 체육부령 제6호	청소년지도자
○ 체육·청소년단체심의위원회회규정	1989.5.30 체육부훈령 제38호	청소년단체
○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1984.8.4 법률 제3743호 전문개정	연령·호칭
○ 최저임금법	1986.12.31 법률 제3927호	청소년의 근로·복무
○ 최저임금법시행령	1987.7.1 대통령령 제12207호	"
○ 최저임금법시행규칙	1987.11.12 노동부령 제42호	"
○ 축산업협동조합법	1980.12.15 법률 제3276호	연령·호칭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1961.12.30 법률 제904호	청소년관련매체·환경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6.8.3 법률 제1822호	청소년시설·공간의 조성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특별소비세법	1976·12·22 법률 제2935호	관련세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76·12·31 대통령령 제8408호	"
○ 특수교육진흥법	1977·12·31 법률 제3053호	청소년의 복리 후생
○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1978·8·30 대통령령 제9151호	"
○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1978·12·30 문교부령 제435호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1966·2·23 법률 제1744호	청소년의 선도· 보호
○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 한특별조치법	1980·1·4 법률 제3258호	청소년시설·공 간의 조성
○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 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1·2·17 대통령령 제10201호	"
○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 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1982·4·3 건설부령 제323호	"
○ 학교급식법	1981·1·29 법률 제3356호	청소년의 건강· 보건
○ 학교급식법시행령	1981·9·8 대통령령 제10460호	"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 관한 규칙	1969.7.19 문교부령 제211호 한글화	청소년의 학업· 진학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1982.12.31 법률 제3634호	청소년시설·공 간의 설치·관리
○ 학교시설·설비기준령	1969.12.4 대통령령 제4398호	"
○ 학교운동장의 개방및이용에 관한규칙	1983.2.17 체육부령 제1호	청소년시설공간 의 이용·관람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1971.6.26 대통령령 제5682호 전문개정	청소년의 근로· 복무
○ 학생군사교육실시령시행 규칙	1972.3.10 국방부령 제5682호 전문개정	"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	1984.4.10 법률 제11665호 전문개정	"
○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1973.3.14 법률 제2616호	청소년유관기관
○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시행령	1973.10.11 대통령령 제6899호	"
○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1984.3.15 대통령령 제11382호	연령·호칭
○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1971.12.31 대통령령 제5926호	"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	1972.3.9 대통령령 제6106호	청소년의 학업· 진학
○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시 행규칙	1972.3.28 문교부령 제293호	"
○ 한국산업안전공단법	1987.5.30 법률 제3931호	청소년유관기관
○ 한국여성개발원법	1982.12.31 법률 제3632호	"
○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1981.12.31 법률 제3506호	"
○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1981.4.13 법률 제3434호	청소년단체
○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법률	1984.12.31 법률 제3985호	"
○ 해외이주법시행규칙	1976.1.16 보건사회부령 제508호 전문개정	연령·호칭
○ 해운업법	1983.12.31 법률 제3716호 전문개정	연령·호칭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 한규정	1982.12.11 대통령령 제10955호 전문개정	"
○ 행형법	1950.3.2 법률 제105호	청소년의 교정· 교화
○ 행형법시행령	1969.10.14 대통령령 제4128호	"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979.12.28 법률 제3216호	청소년의 건강·보건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시행령	1980.6.9 대통령령 제9900호	"
○ 혈액관리법시행규칙	1977.6.14 보건사회부령 제564호 전문개정	연령·호칭
○ 형법	1953.9.18 법률 제293호	기본법령
○ 형사소송법	1954.9.23 법률 제341호	연령·호칭
○ 환경보전법	1977.12.31 법률 제3078호	청소년시설·공간의 조성

7. 청소년 범죄 현황

가. 총 범죄대비 소년범죄 구성비(연도별) (단위 : 명, %)

구분	1985	1986	1987	1988	1989
총범죄	1,005,892	1,041,887	1,113,612	1,144,802	1,337,587
소년범죄	102,225 (100)	106,355 (104.0)	97,849 (104.0)	104,052 (101.8)	108,015 (105.7)
(구성비)	(10.2)	(10.2)	(10.2)	(9.1)	(8.1)

자료 : 대검찰청

나. 소년범죄 연령별 상황

(단위 : 명)

년도	소년범죄자		14세미만		14 ~ 15세		16 ~ 17세		18 ~ 19세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85	102,225	100	1,584	1.5	16,075	15.7	34,201	33.5	50,365	49.3
'86	106,355	100	1,469	1.4	16,198	15.2	33,997	32.0	54,691	51.4
'87	97,849	100	1,793	1.8	14,626	14.9	30,097	30.8	51,333	52.5
'88	104,052	100	1,711	1.6	14,283	13.7	30,416	29.2	57,642	55.4
'89	108,015	100	1,737	1.6	15,666	14.5	31,732	29.4	58,880	54.5

자료 : 대검찰청

다. 연도별 학생범죄 현황

(단위 : 명)

년도	전체범죄 (A)	소년범죄		학생범죄	
		인원(B)	구성비(B/A)	인원(C)	구성비(C/B)
1985	1,005,892	102,225	10.2	41,732	40.8
1986	1,041,887	106,355	10.2	44,519	41.9
1987	1,113,612	97,849	8.8	39,939	40.8
1988	1,144,802	104,052	9.1	42,018	40.4
1989	1,337,587	108,015	8.1	52,409	48.5

※ 전체범죄에는 군인범죄자 제외

자료 : 대검찰청

8. 각급학교 개황

구 분	학교수	학교 및 학과수	학생 수	교원수	입학및졸업자수	
					입 학자	졸업자
총 계	19,585 (1,356)	232,371	11,421,575	384,692	3,030,796	3,060,663
유치원	8,354	14,473	414,532	18,511	359,819	385,357
국민학교	6,335 (1,296)	117,538	4,868,520	136,800	746,707	763,694
중학교	2,474 (45)	45,310	2,275,751	89,719	759,030	835,699
일반계 고등학교	1,096	27,496	1,473,155	58,074	490,951	487,772
실업계 고등학교	587	15,737	810,651	34,609	273,134	274,150
특수학교	104	1,762	19,971	2,757	5,574	4,108
공민학교	1	3	150	4	50	46
고등공민 학교	11	29	393	62	113	227
기술학교	1	1	24	2	—	—
고등기술학교	28	488	24,224	801	11,024	9,052
각종학교(중)	7	86	5,082	147	1,744	1,489
각종학교(고)	31	723	38,313	1,286	13,164	15,606
전문대학	117	1,264	323,825	7,382	130,670	87,131
교육대학	11	345	15,960	694	3,220	4,965
대학(교)	107 (15)	4,009	1,040,166	33,340	196,397	165,916
대학원	298	2,998	86,911	—	35,276	22,269
각종학교(대)	23	109	23,947	504	3,923	3,182

주) 1. 유치원의 입학자수는 재취원자수 미포함

2. 특수학교의 졸업자수는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별 수료자수 포함

3. () 내는 분교수로서 전체수에 미포함

9. 시설강습소 개황

－ 시설강습소수

구 분	총 계	문리계	기술계	기능계	가정계	사무계	독서계
강습소수	28,862	2,359	4,629	9,165	80	12,179	4,033

－ 시·도별 현황

구 분	총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습소수	28,862	9,369	3,118	1,683	1,359	1,118	830	3,444

구 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습소수	777	735	903	992	925	899	2,427	283

－ 시설현황

구분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구보유수	사무실	열람좌석수	보유장서수	기타시설
총계	46,652	18,245	1,358,588	28,096	198,798	2,677,353	8,882
서울	15,254	6,110	605,817	9,504	17,472	766,510	820
부산	4,505	1,111	105,599	2,889	36,904	316,080	1,004

구분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구보유수	사 무 실	열람좌석수	보유장서수	기타시설
대구	1,937	2,495	123,924	1,821	2,390	136,659	331
인천	2,766	1,345	66,571	1,224	510	149,320	496
광주	2,221	1,352	96,128	1,224	—	133,847	177
대전	1,513	812	45,637	700	5,309	80,776	152
경기	4,653	1,094	95,694	2,713	16,607	173,944	679
강원	1,351	352	23,980	666	10,307	94,980	603
충북	2,021	198	13,050	922	3,777	102,812	179
충남	1,140	390	27,862	712	4,528	41,392	281
전북	1,987	49	56,081	1,238	30,334	206,013	666
전남	1,393	568	42,605	855	6,005	63,581	529
경북	1,835	811	35,571	982	21,627	114,974	666
경남	3,596	1,216	12,096	2,399	28,821	268,127	2,181
제주	480	342	7,973	247	4,207	28,338	118

주) 1) 독서실은 총계에 불포함

2) 종합계의 강습소수는 주된 계열에 포함되었으며, 수강자, 이수자 및 강사수 등은 계열별로 구분되었음.